

발 간 등 록 번 호

54-3560000-100003-10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나가는 서구

2025

행정처분기준편람

◎ 불이익처분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www.seo.incheon.kr

행정처분기준편람 이용에 대하여

1. 이 편람은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처분기준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한 자료입니다.
2. 행정처분 시 편람의 내용과 상위 개별법령의 처분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으로 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이양 등으로 인하여 편람을 정비해야 되거나, 행정처분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편람의 개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4. 2025. 1. 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변동된 사항이나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소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처분기준을 갖추고 민원인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관한 문서를 처분기준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법무과 법무의회팀(☎560-4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 1 - 1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10
- 1 -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취소 및 공사중지 등 11
- 1 - 3 개발제한구역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12

● 재 무 과

- 2 - 1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4
- 2 -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7

● 민원봉사과

- 3 - 1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23

● 노인장애인과

- 4 - 1 노인복지시설 경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등 26
- 4 - 2 장례식장의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31
- 4 - 3 노인복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
- 4 - 4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36
- 4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43
- 4 - 6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장 교체·폐쇄 명령 48
- 4 - 7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49
- 4 - 8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52
- 4 - 9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54
- 4 -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57

● 교육지원과

- 5 -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62

● 가정교육과

- 6 - 1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66
- 6 -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78
- 6 - 3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84
- 6 - 4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84

● 문화관광체육과

- 7 - 1 음악관련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영업소 폐쇄 등 91

7 - 2	게임관련업의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영업소 폐쇄 등	95
7 - 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산업 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폐쇄 및 수거 등	102
7 - 4	「공연법」 위반자 폐기명령,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등	115
7 - 5	「관광진흥법」 위반자 영업정지 등	121
7 - 6	체육시설업의 영업정지·영업폐쇄명령 등	142
7 - 7	체육시설업의 과태료 부과	151

● 기후대기과

8 - 1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등	155
8 -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용중지 등	158
8 - 3	전문정비 사업자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160
8 - 4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62
8 - 5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163
8 - 6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166
8 - 7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조치명령	169
8 -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허가·등록취소 등	170
8 -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181
8 - 10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처분	186

● 환경관리과

9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188
9 - 2	석면건축물의 사용중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 과태료 부과	190
9 - 3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96
9 - 4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197
9 -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98
9 -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201
9 - 7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등	202
9 - 8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5
9 - 9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10
9 - 10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214
9 - 1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업무정지	215
9 - 12	대기(수질·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취소 등	217
9 - 13	환경기술인 교육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18
9 - 14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219
9 - 15	「물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230

9 - 16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251
9 - 17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259
9 - 18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의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260
9 - 19 수렵면허 취소·정지	261
9 - 20 박제업 등록취소	265
9 - 21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영업정지	267
9 - 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69
9 - 23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272
9 - 24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73

● 생태하천과

10 - 1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78
10 - 2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85
10 - 3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289
10 - 4 「하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90
10 - 5 소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293
10 - 6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94
10 - 7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96
10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97
10 - 9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300
10 -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1
10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309
10 - 12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18
10 - 13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338

● 안전총괄과

11 - 1 민방위 과태료 부과	356
11 -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357

● 자원순환과

12 - 1 폐기물 과태료 부과	361
12 - 2 (건설)폐기물 과태료 부과	372
12 -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389
12 - 4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414

● 산림정원과

13 - 1	산지전용허가 취소	416
13 - 2	토석 채취 허가의 취소	417

● 식품위생과

14 - 1	식품제조가공업·식품판매업·식품접객업의 허가취소 등	419
14 - 2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 취소	468
14 - 3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정지 등	470
14 - 4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정지 등	497

● 경제정책과

15 - 1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516
15 - 2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517
15 - 3	담배 소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20
15 - 4	대부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521
15 - 5	대부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23
15 - 6	복권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28
15 - 7	통신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31
15 - 8	방문판매·전화권유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35
15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540
15 - 10	축산물판매업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신고취소, 영업소 폐쇄 등	548
15 - 11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취소	589
15 - 12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590
15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594
15 - 14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597

● 청년정책일자리과

16 - 1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600

● 기업지원과

17 - 1	승강기의 운행정지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612
17 - 2	계량제작·수리·증명업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619
17 - 3	공장등록 취소	627
17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628
17 - 5	액화서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633

17 - 6 액화서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643
17 - 7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652
17 - 8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사업정지·과징금 부과	661
17 - 9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694
17 -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708

● 교통정책과

18 - 1 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715
18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등록취소 등	716
18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745
18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776
18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벌점 부과	783
18 - 6 화물자동차운수(운송,주선,가맹) 사업의 허가취소 등	784
18 -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810
18 -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811
18 -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825
18 -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 처분	830
18 - 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한 행정상 제재	832

● 주차관리과

19 - 1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837
19 - 2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838
19 - 3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839

● 차량민원과

20 - 1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841
20 - 2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856
20 - 3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865
20 - 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정지, 과태료부과	878
20 - 5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892

● 도로과

21 - 1 도로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징수	896
21 - 2 도로무단 점유 과태료 부과 등	901
21 -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903
21 - 4 도로점용 허가취소	928

21 - 5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929

● 건축과

22 - 1 건축허가 취소	931
22 -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932
22 - 3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933
22 - 4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934
22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940

● 주택관리과

23 - 1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946
23 - 2 임대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947
23 - 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948

● 주택과

24 - 1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952

● 도시재생경관과

25 -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	959
25 - 2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취소	960
25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961
25 - 4 옥외광고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962

● 토지정보과

26 - 1 개발비용 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부과	966
26 - 2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967
26 -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973
26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974
26 -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978
26 - 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980
26 - 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허위신고)	981
26 - 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신고)	982

● 보건소

27 - 1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신고)취소,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	986

27 - 2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05
27 -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1011
27 -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23
27 - 5	의약품판매업자(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1026
27 - 6	의약품판매업자(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43
27 - 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신고취소, 영업소폐쇄, 업무정지 등	1049
27 - 8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84
27 - 9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등)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취소 등	1087
27 - 10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05
27 - 11	소독업의 업무정지 명령	1107
27 - 1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09
27 - 13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13
27 - 14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15
27 - 15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무정지 등	1119
27 - 16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28

아동행복과

28 -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134

도 시 계 획 과

【일련번호 : 1 - 1】

처 분 명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GB관리팀 (☎ : 560-4681 ~ 4684, FAX : 560-2774)	
처분기준	기 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다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참고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2조, 제13조
	설 정 연 월 일	2000년 1월 28일(법률 제6241호)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사전통지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1 - 2】

처 분 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등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4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GB관리팀 (☎ : 560-4681 ~ 4684, FAX : 560-2774)	
처분기준	기 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0년 1월 28일(법률 제6241호)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차	사전통지 →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1 - 3】

처 분 명	개발제한구역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GB관리팀 (☎ : 560-4681 ~ 4684, FAX : 560-2774)	
처분기준	기 준	[이행강제금]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고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상습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참고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설 정 연 월 일	2000년 1월 28일(법률 제6241호)
처분절차	처리절차	시정명령 불이행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사전통지 → 의견제출
비 고		

재 무 과

【일련번호 : 2 - 1】

처 분 명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 : 560-4160, 4167, FAX : 560-2720)	
처분기준	기 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처분내용> -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별첨 : 공유재산 행정처분기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설 정 년 월 일	○ 2005년 8월 4일 법률 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022.11.15. 일부개정 ○ 2005년 12월 30일 시행령 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023.11.16.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통지 → 변상금납부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별첨]

공유재산 행정처분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4. 24.]

【일련번호 : 2 - 2】

처 분 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담당부서	재무과 계약팀 (☎ : 560-4152~4156, FAX : 560-2720)	
처분기준	기 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영 제92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하여 행한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 2005년 8월 4일 법률 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3.8.16. 타법개정) ○ 2005년 12월 30일 시행령 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7.2. 타법개정) ○ 2006년 1월 2일 규칙 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12.6.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계약심의위원회 → 처분
	의견청취절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청문
비 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별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별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별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별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별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삭제 <2023. 7. 3.>	
13.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4.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5. 영 제92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6.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8.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9.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2.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민원봉사과

【일련번호 : 3 - 1】

처 분 명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 560-3200, FAX : 560-2854)	
처분기준	기 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7년 7월 23일 (2008년 01월 0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 신고해태여부 심사 → 신고해태한자 의견청취(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

계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노인 장애인과

【일련번호 : 4 - 1】

처 분 명	노인복지시설 경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등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3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노인여가시설팀, 장기요양시설팀 (☎ : 560-4970,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 「노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1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경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등 ※ 붙임: 행정처분의 기준[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1년 6월 5일 법률제정(2013년 12월 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노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시 청문 실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의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	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 한 경우			7일	15일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 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 우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 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 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 반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 우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 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 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 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한 경우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9조의3 제2항	지정취소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의3 제2항	지정취소			
6.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7. 감독위반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8.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일련번호 : 4 - 2】

처 분 명	장례식장의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 560-4976,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2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별표6]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처분 -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을 기준으로 같음 - 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
	참고사항	
	설 연 월 일	2000년 1월 12일(2019년 6월 4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 청문 -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 의견제출
비 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 · 영업정지처분 전년도에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 ·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단위: 원)
1	1억 이하	23,000
2	1억 초과 ~ 2억 이하	68,000
3	2억 초과 ~ 3억 이하	110,000
4	3억 초과 ~ 4억 이하	150,000
5	4억 초과 ~ 5억 이하	190,000
6	5억 초과 ~ 7억 이하	250,000
7	7억 초과 ~ 10억 이하	330,000
8	10억 초과 ~ 15억 이하	410,000
9	15억 초과 ~ 20억 이하	500,000
10	20억 초과 ~ 25억 이하	600,000
11	25억 초과 ~ 30억 이하	700,000
12	30억 초과 ~ 40억 이하	820,000
13	40억 초과 ~ 50억 이하	950,000
14	50억 초과	1,100,000

【일련번호 : 4 - 3】

처 분 명	노인복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제5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시설팀 (☎ : 560-4562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9년 12월 30일(2023년 10월 31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노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2항제2호	150	300	500
나. 법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61조의2 제1항제1호	500	1,000	1,000
다.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4항제2호	25	50	75
라.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2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1조의2 제2항제1호	150	300	450
바. 법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3항제1호	150	300	300
사. 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	150	300	500
아.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1항제2호	500	1,000	1,000
자. 법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61조의2 제3항제2호	150	300	300
차.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법 제61조의2 제4항제3호	100	150	200

【일련번호 : 4 - 4】

처 분 명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시설팀 (☎ : 560-4565,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7년 10월 17일 법률제정(2020년 9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경고 : 사전통지 ○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폐쇄명령 : 청문실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지정취소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37조제1항제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호의7		1개월	3개월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법 제37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8호	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10	20	30	40	50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일련번호 : 4 - 5】

처 분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시설팀 (☎ : 560-4562,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7년 9월 27일 법률제정(2023년 4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3)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5	50	75
다.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2호	50	100	150
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마.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바.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	법 제69조제1항제3호	50	100	200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자.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의2	500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카.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0	200	3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150	300	500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파.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일련번호 : 4 - 6】

처 분 명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장 교체·폐쇄 명령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 560-3061~6, FAX : 560-2742)	
처분기준	기 준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2024. 2. 13.>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9년 12월 30일 법률제정(2024년 2월 13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개선명령·사업의 정지·시설장 교체 : 의견제출 ○ 폐쇄명령 :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4 - 7】

처 분 명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 560-3061~6, FAX : 560-2742)	
처분기준	기 준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의거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9년 12월 30일 법률제정(2024년 10월 22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개선명령·사업의 정지·시설장 교체 : 의견제출 ○ 폐쇄명령 : 청문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가. 법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	200만원
라. 삭제 <2016. 6. 28.>		

마. 삭제 <2016. 6. 28.>		
바.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사.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1호	700만원
아. 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4	200만원
자.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차. 법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5	300만원
카.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4호	150만원
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5호	150만원
하.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6호	150만원
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7호	150만원

【일련번호 : 4 - 8】

처 분 명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 560-3064~5, FAX : 560-2742)	
처분기준	기 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 붙임 : 행정처분의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7년 4월 10일 제정(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대상	근거법령	이행강제금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 1항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 2항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 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 4항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 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일련번호 : 4 - 9】

처 분 명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애인시설팀 (☎ : 560-4316, 3064~5 FAX : 560-2742)	
처분기준	기 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7년 4월 10일 제정<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2. 7. 26.>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	법 제27조	100만원

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 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 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일련번호 : 4 - 10】

처 분 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 560-4316, FAX : 560-2741)	
처분기준	기 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참고사항	
	설 연 월 일	2011년 1월 4일(2015년 8월 13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절차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 의견제출, 청문
비 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10일	20일	30일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10일	20일	30일	40일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3천만원 이상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 X 100으로 산출한다.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교 육 지 원 과

【일련번호 : 5 - 1】

처 분 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 : 560-3101~4, FAX : 560-2716)	
처분기준	기 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징금 부과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의하여 처분한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7년 3월 7일(2016년 1월 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구분	경고	청소년유해매체 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특 수일간신문	1회	2회·3회	4회·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 이상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 반주간신문, 특 수주간신문	1회	2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8회까지	9회 이상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 물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를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가 정 보 육 과

【일련번호 : 6 - 1】

처 분 명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 (☎ : 560-4981~7, FAX : 560-2744)	
처분기준	기 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붙임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별첨1]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붙임 : 과징금 산정기준[별첨2]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2024.3.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1991. 8. 8. 제정(2024.10.22.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청문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시설폐쇄 : 청 문 - 운영정지 : 청 문
비 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1 제3호가목4)아)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휴지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시설 폐쇄		

다)				
4)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 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 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나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2)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나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1) 1천만원 이상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5) 1백만원 미만	법 제45조 제1항제1호 의2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1) 1천만원 이상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법 제45조 제1항제1호 의3	시설폐쇄 운영정지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년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시설폐쇄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시설폐쇄 운영정지
나.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4	1개월	3개월	6개월
1)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다.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1) 3백만원 이상		시설폐쇄		
2)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러.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어린이집의 폐지		시설폐쇄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버.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서.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 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 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 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4호	시설폐쇄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시설폐쇄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 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시설폐쇄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 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 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8 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 우	법 제45조 제1항제5호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 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				

게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19. 6.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30 미만	10,000
2	30 이상 ~ 60 미만	30,000
3	60 이상 ~ 100 미만	53,000
4	100 이상 ~ 200 미만	70,000
5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6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7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8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9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0	700 이상 ~ 800 미만	164,000
11	800 이상 ~ 900 미만	186,000
12	900 이상 ~ 1,000 미만	208,000
13	1,000 이상 ~ 1,100 미만	230,000
14	1,100 이상 ~ 1,200 미만	252,000
15	1,200 이상 ~ 1,300 미만	274,000
16	1,300 이상 ~ 1,400 미만	296,000
17	1,400 이상 ~ 1,500 미만	318,000
18	1,500 이상 ~ 1,600 미만	340,000
19	1,600 이상 ~ 1,700 미만	362,000
20	1,700 이상 ~ 1,800 미만	383,000
21	1,800 이상 ~ 1,900 미만	405,000
22	1,900 이상 ~ 2,000 미만	427,000
23	2,000 이상	438,000

【일련번호 : 6 - 2】

처 분 명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 (☎ : 560-4981~7, FAX : 560-2744)	
처분기준	기 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0], 제48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2.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의한 자격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붙임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첨1]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2024.3.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1991. 8. 8. 제정(2024.10.22.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위반사항 발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처분사전 통지 : 위반사항 통보 및 제출
비 고		

[별첨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2. 9.>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라) 1백만원 미만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1년 자격정지 1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법 제46조제1 항제5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46조제1 항제6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 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 항제7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8호	1개월 자격정지 1년	3개월 자격정지 1년	1년 자격정지 1년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2	자격정지	자격정지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개월 자격정지 1개월	4개월 자격정지 3개월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일련번호 : 6 - 3】

처 분 명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 (☎ : 560-4981~7, FAX : 560-2744)	
처분기준	기 준	○ 「영유아보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산정기준(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2024.3.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1991. 8. 1. 제정(2024.10.22.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진술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비 고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00	10,000	10,000
나.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5	50	75
다.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5호	50	100	15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6조제3항제3호	100	200	300

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500	500	500
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200	300	500
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200	300	500

【일련번호 : 6 - 4】

처 분 명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 (☎:560-4981~7, FAX:560-2744)	
처분기준	기 준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 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9 제2호에 버목)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붙임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첨]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2024.3.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1991. 8. 8. 제정(2024.10.22.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청문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운영정지 : 청문
비 고		

별표 9 제2호 버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버.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문화관광체육과

【일련번호 : 7 - 1】

처 분 명	음악관련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영업소 폐쇄 등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 : 560-5936,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 처분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6년 4월 28일(2024년 3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등록(허가)취소 : 청문 - 영업정지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일련번호 : 7 - 2】

처 분 명	게임관련업의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영업소 폐쇄 등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38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 (☎ : 560-5930,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 처분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취소 등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 및 수거 등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6년 4월 28일(2025년 1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 등록(허가)취소 : 청문 - 영업정지 등 : 의견제출
비 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22.>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삭제 <2020. 12. 1.>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5일	10일	1개월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는 영업폐쇄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2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10일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1개월	3개월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영 업 정 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영 업 정 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비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제2호라목
·마목·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
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게임물의 영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일련번호 : 7 - 3】

처 분 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산업 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폐쇄 및 수거 등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 560-4347,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동법 시행령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비디오산업 행정처분 (3) 법 제68조에 따른 비디오산업 과징금 부과 (4) 법 제70조에 따른 비디오산업 폐쇄 및 수거 (5) 법 제98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6년 4월 28일(2025년 1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폐쇄명령 : 청문 - 영업정지등 : 의견제출
비 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5.>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

가. 일반기준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 (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3)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4)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3)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 (5)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처분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영화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7)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5조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6)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8)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3)·(4)·(6) 및 (7)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다)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대하 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 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 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 여 분류받은 영화의 상영등 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 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3)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 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 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 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 월	등록취소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법 제45조제 1항제4호의2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 분을 받은 때	법 제45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2.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 가.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 나.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일 수 1일
당 영업정지 2일

3.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 가.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 나.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 이상 2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
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 다.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의2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1)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시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1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 인받지 않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3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바.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제출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2호	30만원 60만원

3) 제출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사. 법 제3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 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등록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변경등록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등록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자. 법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1)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 한 경우 2)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 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계획신고 또는 보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 우	법 제98조 제2항제4호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차.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4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 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5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타.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 고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하지 않은 자에게 영화를 상영하게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7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하. 법 제46조제4항이나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98조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제3항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거.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3호의2	1,500만원
너.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1)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의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8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러.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9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머.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5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버. 법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6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25.>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

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7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우 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1)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2)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제 2 항 제 2 호		1개월	3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5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복 합영상물제공업자가 법 제 6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주류를 판매·제공하 는 행위를 한 경우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 다)를 고용·알선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 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 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 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 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하 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 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 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7 호	등록취소			

【일련번호 : 7 - 4】

처 분 명	「공연법」 위반자 폐기명령,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등	
근거법령	「공연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 560-4347,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공연법」(이하 “법”이라 함)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법 제42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공연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폐기명령 등 (2)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3) 법 제34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4)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61년 12월 30일(2024년 10월 2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등록취소 : 청문 - 영업정지등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람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 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계상하지 않은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용도 외 사용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사. 법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아.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자.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카.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5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타. 법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파.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법 제43조			

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거.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법 제32조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5. 4.>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1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3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한다.
 - 2)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	3일	7일	경고	1개월	3개월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경우							
다.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 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경우,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	7일	15일	15일	1개월	3개월
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7일	15일	30일	1개월	3개월	6개월
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일	7일	15일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경고	3일	7일			
사.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3일	7일	15일			
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1개월	3개월	6개월
자.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2	3일	7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3	7일	15일	1개월			
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7일	15일	1개월			
타. 법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일련번호 : 7 - 5】

처 분 명	「관광진흥법」 위반자 영업정지 등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5조부터 제36조, 제37조 및 제86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 (☎ : 560-5930,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부터 제36조, 제37조 및 제86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 (2) 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3)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등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6년 12월 31일 전부개정(2024년 2월 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등록(허가)취소 : 청문 - 영업정지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없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으로 하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 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만 해당한다)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나) 가) 외의 관광사업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1) 카지노업				취소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하고 변경한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유원시설업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취소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우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 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 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 소 (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 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 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1) 카지노업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 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 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 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파.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					

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하.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2	취소			
1)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3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더.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시정명령	승인취소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며.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서.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서 영업을 하는 경우	1개월	3개월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하 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 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 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 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 소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 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 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 니하는 경우				
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10일	1개월	3개월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퍼.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용한 경우 허.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취소	3개월)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2. 6.>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 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 엄업	전문 휴양 업	종합 휴양 업	야영 장업	관 광 유 람 선 업	관 광 공 연 장 업	외 국 인 관 광 도 시 민 박 업	한 옥 체 험 업	국제 회의 시설 업		국제 회의 기획 업	카지노업	종합 유원 시설 업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 업	가족 호텔 업	한국 전통 호텔 업	호스 텔업	소형 호텔 업	의료 관광 호텔 업																		
종합 여행 업	국내 외여 행업	국내 여행 업	5성 급 · 4 성급	3성 급							2성 급 이하																	
1. 법 제4조를 위반 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 합하지 않게 된 경우 나. 관광사업의 변 경등록기간을 위 반한 경우 다. 등록한 영업범 위를 벗어난 경 우 2. 법 제5조를 위반	법 제4조 법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illegible]

3) 허가 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를 하지 않고 변 경한 경우 4) 신고 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 한 경우	법 제8조를 위반 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u>40</u>	400	200	300	400	320	120

– 135 –

[illegible]

[illegible]

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0	0	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 0	160 0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 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20 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																							200 0	160 0	120 0

[illegible]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30	60	100

나.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4호	100	100	100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2	30	60	1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3	50	100	100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바.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50	300	500
사.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5	3	3	3
아. 삭제 <2019. 4. 9.>				
자. 법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6호	30	60	100

【일련번호 : 7 - 6】

처 분 명	체육시설업의 영업정지·영업폐쇄명령 등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 : 560-4134,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2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별표7])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3. 3. 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9년 3월 31일(2024년 8월 2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 청문 - 영업정지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삭제 <2023. 12. 29.>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6)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우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 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 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 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 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 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 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 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 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일	10일	20일	1개월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illegible]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일	1개월	2개월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 해를 입은 경우				

【일련번호 : 7 - 7】

처 분 명	체육시설업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 : 560-4134, FAX : 560-2748)	
처분기준	기 준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4)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5.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9년 3월 31일(2024년8월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	법 제40조 제1항제1호			

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시설물에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시설물에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라.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기 후 대 기 과

【일련번호 : 8 - 1】

처 분 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등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560-592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 21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별표 21])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 (2023년 6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소 음 원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 사 장, 공 장·사 업 장 으 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 령	건 설 기 계 의 사용 등의 명 령	건 설 기 계 의 사용 등의 명 령	
		확성기로 한정 함	소리의 크기 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하였다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 음원의 사용금 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 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 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 한 등의 명령			

참고

-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일련번호 : 8 - 2】

처 분 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용중지 등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560-592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1)법 제43조규정에 의한 경고,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2)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2022년 5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경고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일련번호 : 8 - 3】

처 분 명	전문정비 사업자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560-592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4년 12월 31일(2022년 5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영업정지 : 의견제출 - 등록취소 : 청 문
비 고	위임사무(시->구(2013.7.1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 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호	등록취소	-	-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2호	등록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9조 제4호	등록취소	-	-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5호	등록취소	-	-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9조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일련번호 : 8 - 4】

처 분 명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악취방지법」 제30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악취관리팀(☎ 560-323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악취방지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 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 항 후단에 따 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변 경 신 고 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조 치 명 령 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4년 12월 31일(2022년 5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8 - 5】

처 분 명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근거법령	「악취방지법」 제10조, 제11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악취관리팀(☎ 560-323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 개선명령 「악취방지법」 제10조에 의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 조업정지명령 「악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21년 12월 31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차	청문
비 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9. 2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으며,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 업무 또는 악취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비고

- 1) 및 2)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 3) 및 4)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 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 가.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나.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일련번호 : 8 - 6】

처 분 명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법령	「악취방지법」 제13조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악취관리팀(☎ 560-323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 「악취방지법」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법」 제8조 후단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신고대상시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5년 2월 10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청문
비 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9. 2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으며,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 업무 또는 악취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

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법 제13조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비고

- 1) 및 2)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 3) 및 4)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 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 가.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나.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일련번호 : 8 - 7】

처 분 명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조치명령	
근거법령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권고 등)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악취관리팀(☎ 560-323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 개선권고 - 「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신고대상시설 이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조치명령 - 「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개선권고를 받은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05년 2월 10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8 - 8】

처 분 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허가·등록취소 등	
근거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제9조의2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 (☎ : 560-331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별표 13의2]) 및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83년 12월 31일(2019년 10월 31일 최종변경) (단, 과징금부과는 2013년 3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허가 및 등록취소 : 청 문 -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고압가스의 제조·충전·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무목1), 4) 및 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마목 본문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

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법조 문	행 정 처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다. 고의나 과실로 공중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허가 취소
마.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허가 취소
사.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9조제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항 제7호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정지 또는 제한 60일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차.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카.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않은 용기에 충전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17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일	일		
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머.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8호의2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버.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서.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7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터.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허.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9조제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1항 제27호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정지 또는 제한 60일	정지 또는 제한 180일
고.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2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노.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2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도.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로.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소.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오.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 제3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초.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	법 제9조제1항	사업 정지	사업 정지	사업 정지 또는	사업 정지 또는

은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제36호의2	또는 제한 10일	또는 제한 20일	제한 60일	제한 180일
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3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토.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4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포.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5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호. 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사용정지·제한·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 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루.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3호	허가 취소			
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의2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법 제35조의2	지정 취소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1)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 제 24조 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나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2) 자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 제 24조 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나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지정 취소
3)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영 제24조 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4)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영 제24조 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지정 취소
5)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 제24조 제2항제1호 바목 및 제2호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지정 취소
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5호				
1)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2)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5) 검사규정, 운영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6) 제58조의3를 위반하여 내압·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의 고장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별표 2] <개정 2013.3.23>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나.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냉동 또는 냉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1	1억 이하	30
2	1억 초과 ~ 3억 이하	70
3	3억 초과 ~ 5억 이하	120
4	5억 초과 ~ 7억 이하	160
5	7억 초과 ~ 10억 이하	200
6	10억 초과 ~ 13억 이하	240
7	13억 초과 ~ 16억 이하	280
8	16억 초과 ~ 20억 이하	320
9	20억 초과 ~ 25억 이하	360
10	25억 초과 ~ 30억 이하	400
11	30억 초과 ~ 40억 이하	440
12	40억 초과 ~ 50억 이하	480
13	50억 초과 ~ 70억 이하	520
14	70억 초과 ~ 100억 이하	560
15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600
16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640
17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680
18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720
19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760
20	500억 초과	800

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종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냉동제조능력	고압가스저장능력	
1종	50톤 이하	30톤 이하	30
2종	50톤 초과 ~ 100톤 이하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
3종	100톤 초과 ~ 300톤 이하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400
4종	3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600
5종	500톤 초과	1,000톤 초과	800
비고 1.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한다. 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냉동제조능력에 2를 곱한 수치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냉동제조능력으로 한다.			

【일련번호 : 8 - 9】

처 분 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 (☎ : 560-331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 부과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2)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3년 12월 31일(2023년 4월 25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3호	250	350	500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1호		150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 2	500	700	1,000
사.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800	
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4호		300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	법 제43조 제3항제5호	250	350	500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카.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1,200	
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500	700	1,000
하.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1,000	1,500	2,000
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6호	250	350	500
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의2	500	700	1,000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1,000	1,500	2,000
러.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2호	150	200	300
머.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1,000	1,500	2,000
버.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2	150	200	300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 3	150	200	300
어.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3호	150	200	300
저.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500	
처.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6호	1,000	1,500	2,000
커.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500	700	1,000
터.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7호		1,000	

【일련번호 : 8 - 10】

처 분 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 (☎ : 560-3310, FAX : 560-2751)	
처분기준	기 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 부가기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1조의2 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2) 법 제11조의2 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3) 법 제11조의2 9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해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참고사항 참조)
	참고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설 정 년 월 일	2018년 3월 20일(2021년 7월 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환 경 관 리 과

【일련번호 : 9 - 1】

처 분 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94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내용> 1. 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별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부과기준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13년7월16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 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2】

처 분 명	석면건축물의 사용중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3,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석면안전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등 -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18년 12월 4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1호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00	200	300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1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 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 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 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 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 2 항 제 2 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 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 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3호	50	100	150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4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 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		30	50	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4호	50	100	15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6호	200	300	500
거.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5호	50	150	200
너.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7호	150	200	300
더.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6호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러.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7호	50	100	150
머.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	700	1,500

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 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8호 법 제49조 제3항제9호	300	400	500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 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

【일련번호 : 9 - 3】

처 분 명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제29조 「환경보건법」 제33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환경보건법」 제33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같은 법 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항 제1호	250	350	5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 제7호	250	350	500	
참고사항	-					
설 정 년 월 일	2016년 7월 28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4】

처 분 명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 제23조제5항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처분
	참고사항	개선명령 기간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 정 년 월 일	2012년 2월 1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5】

처 분 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1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4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등 -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20년 5월 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고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최근 1년간의 여러 위반행위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횟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1호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30	50	100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60	100	200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90	150	3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2호	150	210	300
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제1호	100	140	200
마.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제2호	100	140	200

【일련번호 : 9 - 6】

처 분 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근거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1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4항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1항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같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조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참고사항	개선명령 기간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 정 년 월 일	2013년 2월 2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7】

처 분 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등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1]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tr><td>3) 운행차수시점검의 결과</td><td>법 제38조 제1항</td><td></td><td></td><td></td><td></td></tr><tr><td>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td><td></td><td>개선명령</td><td></td><td></td><td></td></tr><tr><td>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td><td></td><td>개선명령</td><td></td><td></td><td></td></tr><tr><td>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td><td></td><td>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운행차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 제1항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운행차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 제1항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참고사항	-																																								
설 정 연 월 일	1991. 2. 2.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법 제23조 제1항	공 사 장, 공 장 · 사 업 장 으	작 업 시 간 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 위 의	작 업 시 간 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 위 의	작 업 시 간 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 위 의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경우		로 한 정 함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등의 명령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확성기로 한 정 함	소리의 크기 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3) 운행정차 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가) 운행정차의 소음이 운행정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일련번호 : 9 - 8】

처 분 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
	설 정 년 월 일	2009년 6월 9일 (2023년 5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140	200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8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	10	10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500	1,000	2,000
타.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500	1,000	2,000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60	1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100	1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40	2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100	140	200

버린 경우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100	160
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7호	10	10	10
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너.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75	150	300
더.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60	80	100
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9호	60	80	100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60	80	100

【일련번호 : 9 - 9】

처 분 명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등 세부사항 : [붙임] 별표 참조
	참고사항	-
	설 정 년 월 일	2004년 5월 30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고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호	200	350	500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2호	200	350	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법 제16조제2항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 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4호 법	50	70	100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제16조제3항 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3호	200	350	500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8호	200	350	500
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8호의2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250	370	500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200	300	400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100	150	200
파.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9호	100	150	200
하.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10호	250	370	500

【일련번호 : 9 - 10】

처 분 명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근거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개선명령)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6년 12월 30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고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11】

처 분 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 560-317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13년 7월 16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 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비고: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일련번호 : 9 - 12】

처 분 명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취소 등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환경산업팀(☎ : 560-4630, 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대기(수질·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를 행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2023년 8월 16일 최종변경) 1990년 8월 1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1990년 8월 1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허가취소 : 청문 - 조업정지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13】

처 분 명	환경기술인 교육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 560-463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3)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2023년 8월 16일 최종변경) 1990년 8월 1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1990년 8월 1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14】

처 분 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43조, 제70조, 제84조, 제94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환경산업팀(☎ : 560-4630, 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 (3) 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4)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 법률제정(2024년 7월 24일 최종변경) 1991년 1월 28일 시행령제정(2025년 1월 1일 최종변경) 1991년 2월 2일 시행규칙제정(2025년 1월 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 청문 -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38조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밖에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나)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7)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8)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는 행위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는 행위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9)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소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 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20일
11)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경 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1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6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다)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라)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1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5)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명령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16)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호·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2)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4), 5)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7), 11) 및 12)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7)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삭제 <2013.2.1>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 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법 제36조제9호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9호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6)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8)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 제1호	등록취소			
9)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 제2호	경고	등록취소		
10)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 제3호				
가)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 제4호	등록취소			
12)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 제5호	등록취소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6호				
가) 제37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제37조의5제5호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14)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 제7호	등록취소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3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라)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4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경 고	사용중지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5)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1호	경 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라)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3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라. 삭제 <2013.2.1>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5조 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3호	경 고	경 고	인증취소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4호	경고	경 고	인증취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1호	인증취소		
6)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저감효율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3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인증취소

8)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13)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비고:

-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바. 삭제 <2013.2.1>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호	등록취소	-	-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2호	등록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9조 제4호	등록취소	-	-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69조	등록취소	-	-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조 제5호 법 제69조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의3제1호	지 정 취 소			
2) 법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 무 정 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 무 정 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 무 정 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 무 정 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 무 정 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의3제3호	업 무 정 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냉매회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1호	등록취소	—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	법 제76조의13제2	경고	등록취소	—

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 우	호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3 호	등록취소	—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76조의13제4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6조의13제5 호	등록취소	—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6 호	등록취소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7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일련번호 : 9 - 15】

처 분 명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 : 560-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물환경보전법」(제71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 처분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4)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0년 8월 1일(2025년 1월 2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폐쇄명령 : 청문 -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 (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업장의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제1항제7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일	3개월	또는 폐쇄명령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4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법 제4조의6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4항, 법 제40조		5일	10일	20일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6호	폐쇄명령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	법 제4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폐쇄명령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5호	허가취소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제4항	경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

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 · 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자가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 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나)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10일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	법 제38조의3제2항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4제2항	조업정지5 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 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6)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	법 제35조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				

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3항, 법 제42조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 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 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 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 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 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 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 3항, 법 제39 조, 법 제40 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 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 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 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 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 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 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삭제 <2024. 11. 7.>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 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 처분	법 제42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을 가동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	법 제42조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 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 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 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 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 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 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 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 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한 경우	법 제42조제 1항제4호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 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역인 경우		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 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폐쇄명령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5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7항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저감시설 설치명령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저감시설 개선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9항	경고 경고	사용중지 경고	사용중지	조업정지
2)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4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가) 허가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허가요건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의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10일	1개월	2개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 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 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일련번호 : 9 - 16】

처 분 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배출시설 사업장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 : 560-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1990년 8월 1일(2024년 6월 1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폐쇄명령 : 청문 -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 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 쇄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폐 쇄, 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폐 쇄, 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 쇄, 허가취소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5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7)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7)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6)은 방지사설설치 완료일까지, 3)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설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설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설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 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2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4)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5)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 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6)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 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7)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 4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의3제4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3)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마. 타이어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4조의3제1항	시정명령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3제3항	제작·수입 · 판매·사 용금지명령			

바.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3조제2호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43조제3호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4호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제5호	업무정지 6일	등록취소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제7호				
가)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나)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사.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소음도 검사기관이 시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2호			

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3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일련번호 : 9 - 17】

처 분 명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 : 560-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 (3) 부과계산식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가산금 (수질분야에 한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0년 8월 1일(2024년 7월 24일 최종변경) 1990년 8월 1일(2025년 1월 2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배출부과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18】

처 분 명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의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근거법령	「수도법」 제35조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허가팀 (☎ : 560-463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3년 12월 27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사업장 폐쇄명령 : 청문 - 영업정지 등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19】

처 분 명	수렵면허 취소·정지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 : 560-4355,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행한다. < 면허 취소 > 법 제4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 취소 및 정지 > (1)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2)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2월 9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통보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면허취소 : 청 문 - 면허정지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호,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

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가)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1항제3호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법 제49조 제1항제5호 법 제49조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경고 경고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6개월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물을 포획한 경우	제1항제6호		3개월	6개월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 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 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 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 지 않은 경우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1년을 초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수렵을 한 경우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 은 경우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경고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일련번호 : 9 - 20】

처 분 명	박제업 등록취소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 560-4355,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40조제5항에 따라 박제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2월 9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통보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등록취소 : 청문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2. 개별기준

과.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일련번호 : 9 - 21】

처 분 명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영업정지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3조(행정처분)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Tel 560-4630, Fax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 제정 : 2014. 12. 31. - 시행 : 2016. 1. 1. - 일부개정 : 2024. 3. 19.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필요시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행정처분 경고 및 영업정지 : 사전통지(의견청취)
	의견청취 절 차	우편(팩스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일련번호 : 9 - 22】

처 분 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Tel 560-4630, Fax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 제정 : 2014. 12. 31. - 시행 : 2016. 1. 1. - 일부개정 : 2023. 4. 18.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필요시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과태료처분
	의견청취 절 차	우편(팩스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나.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라.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4호	250	350	500
아.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5호	250	350	500

【일련번호 : 9 - 23】

처 분 명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 : 560-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2)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3)법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01월 5일 법률제정(2023년 1월 1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확인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9 - 24】

처 분 명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 : 560-4360, FAX : 560-2752)	
처분기준	기 준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부과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3])에 따른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01월 5일 법률제정(2023년 1월 14일 최종변경) 1995년 12월 29일 시행령제정(2024년 11월 1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의2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2호	100	150	200
마. 법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	법 제32조제2항제3호	50	100	200

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4호	50	70	100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의2	100	150	200
자.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걱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의3	100	150	200
차.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의4	100	150	200
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7호	100	150	200
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8호	150	170	200
거.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0호	50	100	200
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1호	50	100	200
러.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1호의2	50	100	200
머.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2호	50	100	200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서.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3호	100	150	200

생 태 하 천 과

【일련번호 : 10 - 1】

처 분 명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8,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함)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2.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처분기준	기 준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법 제4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97년 1월 13일(2025년 3월 2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조사·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 의견제출
비 고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1)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바.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2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1호	10	20	30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200	300	400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50	100	150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8호	50	100	200
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4호	500	500	500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법 제39조제5호			

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200	300	400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2호	10	20	30
러. 법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0호	50	100	200
머.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7호	200	300	400
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1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2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3호	30	50	70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4호	30	50	70

【일련번호 : 10 - 2】

처 분 명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제80조(과태료)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하수팀 (☎ : 560-453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 「하수도법」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수도법」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점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점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과태료) ①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설 년 월 일	1966년 8월 3일(2018년 10월 1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내부방침→사전통지→의견청취(의견제출)→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의견제출																							
비 고	○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td><td>법 제80조제4항제1호</td><td>50</td><td>70</td><td>100</td></tr><tr><td>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80조제5항제1호</td><td>30</td><td>40</td><td>50</td></tr><tr><td>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td><td>법 제80조제4항제4호</td><td>50</td><td>70</td><td>1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 제6호	50	70	100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및 “별표 2”

과태료 처분 기준표

위반사항	해당조문	과 태 료
1. 조례 제7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조례 제25조1항제1호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2. 조례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조례 제25조1항제2호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3. 조례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	조례 제25조1항제3호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	조례 제25조2항	· 가사용전용자 : 면한요금의 2배 ·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4배

- ※ 조례 제25조제1항1호 및 2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2항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일련번호 : 10 - 3】

처 분 명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근거법령	하천법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함) 제69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71년 1월 19일 (2020년 12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 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허가·승인취소 : 청 문
비 고		

【일련번호 : 10 - 4】

처 분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하천법」 제9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 「하천법」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7. 1. 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2017. 1. 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71년 1월 19일 (2020년 12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한 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98조 제3항제1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나. 삭제 <2017. 7. 17.>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	법 제98조 제3항제3호	30만원	40만원	60만원

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라. 삭제 <2017. 7. 17.>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5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6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7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일련번호 : 10 - 5】

처 분 명	소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95년 1월 5일 (2019년 12월 1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 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허가·승인취소 : 청 문
비 고		

【일련번호 : 10 - 6】

처 분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 「소하천정비법」 제29조(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71년 1월 19일 (2019년 12월 1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일련번호 : 10 - 7】

처 분 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2010년 4월 15일 (2017년 3월 2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허가·승인취소 :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10 - 8】

처 분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 : 560-091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실정년월일	1971년 1월 19일 (2020년 1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과태료 : 의견제출
비 고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만원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160만원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만원

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220만원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500만원
아.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220만원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70만원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70만원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3호	210만원

【일련번호 : 10 - 9】

처 분 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 560-4897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관리 기준 위반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7년 9월 2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개선명령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10 - 10】

처 분 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 560-4897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법 제5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별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7년 9월 2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과태료부과)
	의견청취절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300	400	500

2.0배 이상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50	70	100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50	70	100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8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8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제5항	법 제53조	50	70	10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4호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200	300	500
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7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50	70	100
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너.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법 제53조 제3항제7호	50	70	100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 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 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 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머.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 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 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 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 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 상		600	800	1,000
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 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50	70	100
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50	70	100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50	70	100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50	70	100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50	70	100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7호	50	70	100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8호	50	70	100

【일련번호 : 10 - 11】

처 분 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 560-4897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2조 및 제33조, 제3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를 한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2.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4.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행정처분 기준(별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7년 9월 2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 청문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하지 않은 경우		령 1개월	명령 2개월	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 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 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 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 령 2개월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 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 령 2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 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 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 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 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 령 2개월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 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 우	법 제18조제 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 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 령 3개월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 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 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 령 2개월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법 제18조제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1항제10호	경고	허가취소		
1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1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2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3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4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 명령 3개월	폐쇄명령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우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	허가취소			
16)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한 경우		1개월	3개월	지 6개월	
6)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9호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일련번호 : 10 - 12】

처 분 명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 560-3050,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 「하수도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8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법 제8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법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별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7년 9월 2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수질기준위반) →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개선명령) → 이행완료보고 → 수질기준측정(확인) - 적발 →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과태료부과)
	의견청취절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m ³ /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		300	400	5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 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50	100	200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5) 처리용량 20m³/일 이상 50m³/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미만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6)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100m³/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미만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 준의 3.0배 이상 7) 처리용량 100m³/일 이상 300m³/ 일 미만				
	70	120	220	
	120	200	300	
	50	100	200	
	70	120	220	
	100	150	250	
	150	250	350	
	70	120	220	
	100	150	250	
	120	200	300	
	200	300	400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	50	70	100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	50	70	100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의2	50	70	100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2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150	25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6호	50	70	100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4호	30	40	50
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5호	30	40	50
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6호	30	40	50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7호	50	70	100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호	50	70	100
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9호	50	70	100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호	100	100	100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1호	100	100	100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m ³ /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m ³ /일 이상 5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의 오수 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호	50	70	100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호	50	70	100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호	50	70	100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호	100	100	100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호	100	100	100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8호	100	100	100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9호	100	100	100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0호	100	100	100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법 제80조제4항제21호	100	100	100

않은 경우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2 호	100	100	100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3호	50	70	100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80조제4항제24호	50	70	100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 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 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5호	50	70	100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 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6호	50	70	100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50	70	100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 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

[별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2호			
1)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m ³ /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		300	400	500
다.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100	150	250

의 3.0배 이상			
4) 처리용량 10m³/일 이상 20m³/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m³/일 이상 50m³/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100m³/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바.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	50	70	100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	50	70	100
차.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	50	70	100
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의2	50	70	100
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3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		100	150	250

500m³/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m³/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파.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4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 500m³/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50	200	25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m³/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거.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너. 법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의2	50	70	100
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 4호	30	40	50
서.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 5호	30	40	50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 6호	30	40	50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7호	50	70	100
처.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8호	50	70	100
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9호	50	70	100
터.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10호	100	100	100
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11호	100	100	100
허.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12호			
1) 처리용량 2m ³ /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m³/일 이상 20m³/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m³/일 이상 50m³/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300m³/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m³/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고. 법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호	50	70	100
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호	50	70	100
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호	50	70	100
로.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모.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호	100	100	100
보.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호	100	100	100

소.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8호	100	100	100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9호	100	100	100
조.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0호	100	100	100
초.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1호	100	100	100
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2호	100	100	100
토.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3호	50	70	100
포.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4호	50	70	100
구.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5호	50	70	100
누.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6호	50	70	100
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를 한 경우	제27호			
루. 법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

【일련번호 : 10 - 13】

처 분 명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49조, 제5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 560-3053, FAX : 560-2721)	
처분기준	기 준	「하수도법」 제49조 및 제50조, 제54조에 따른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의 행정처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 따른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별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0, 별표15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7년 9월 27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 청문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관련)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 운반한 경우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바.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 · 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1항제3호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법 제49조 제1항제5호 법 제49조 제1항제6호 법 제49조	허가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6개월 경고 허가취소 경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경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수료를 받는 경우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허가취소			
차. 삭제 <2014.7.17>					
카. 삭제 <2014.7.17>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 관련)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법 제54조제	영업정지	등록취소		

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항제4호	6개월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0) 삭제 <2014.7.17>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1호	등록취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는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12) 삭제 <2014.7.17>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법 제54조제1항제15호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9) 삭제 <2014.7.17>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2,000	5,000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2,000	5,000	10,000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	5,000	10,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000	10,000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1,000	3,000	5,000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2,000	5,000	10,000
6.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법 제49조제1항			

수집·운반한 경우	제4호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3,000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	1,500	3,000
7.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500	1,500	3,000
8.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1,500	3,000
9.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5호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00	1,500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500	1,500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00	1,500	
10.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6호			3,000
11.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500	1,500	3,000
1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8호	500	1,500	3,000

비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별첨]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관련)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법 제4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하계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	법 제49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료를 받는 경우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	법 제49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제1항제8호		1개월	3개월	6개월
한 경우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49조	허가취소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9호				
차. 삭제 <2014.7.17>					
카. 삭제 <2014.7.17>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	법 제49조	허가취소			
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	제1항제12				
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호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49조	허가취소			
경우	제1항제13				
	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 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 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 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	법 제54조 제1항제10 호	등록취소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 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 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 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 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0) 삭제 <2014.7.17>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 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 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 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 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 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피한 경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등록취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호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		등록취소			

는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9) 삭제 <2014.7.17>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안 전 총 괄 과

【일련번호 : 11 - 1】

처 분 명	민방위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 560-4284, FAX : 560-2735)	
처분기준	기 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75년 7월 25일 (2015년 7월 20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동 : 위반행위조사→구에 송부 구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견제출(10일이상)→과태료 부과통지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11 - 2】

처 분 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근거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 560-2884, FAX : 560-2735)	
처분기준	기 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11. 3. 8.(2024. 2. 13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5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 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법 제34조 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	법 제34조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 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3호	500만원		

자 원 순 환 과

【일련번호 : 12 - 1】

처 분 명	폐기물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 : 560-4551~5, FAX : 560-2760)	
처분기준	기 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아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6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법 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별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참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설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 1987년 4월 1일(2020년 11월 2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처분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20	20	20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		10	20	30

한 경우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2항	100	200	300

	제1호의3			
너. 삭제 <2024. 8. 13.>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 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 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		300	500	700

에 보관한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4	500 500 500 300	700 700 700 500	1,000 1,000 1,0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200 200 200 300	500 500 500 500	1,000 1,000 6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사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50 100	70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9호	300 100 100 100	3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	법 제68조제2항	100	200	300

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호의3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투.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1호	500	700	1,000

【일련번호 : 12 - 2】

처 분 명	(건설)폐기물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560-4401~8, FAX : 560-2760)	
처분기준	기 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처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천만원이하 과태료 (2)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3)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부과기준(별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5)
	설 정 년 월 일	- 「폐기물관리법」 1987년 4월 1일(2020년 11월 24일 최종변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1일(2023년 9월 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처분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		10	20	30

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	법 제68조	100	200	300

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2항 제1호의3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 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 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 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 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 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 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 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 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 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사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50 100	70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9호	300 100 100 100	3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	법 제68조제2항	100	200	300

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호의3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	법 제66조제1항 제1호	100	300	500

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 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 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 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 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 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 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 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 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법 제66조제1항 제6호의2	500	700	1,000

경우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 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 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 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 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 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2호	50	70	100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 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 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 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 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 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3호	50	70	100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500	700	1,00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500	700	1,000
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9호	500	700	1,000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0호	500	700	1,000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8호	100	200	300
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4호	50	70	100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9호	100	200	300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5호	50	70	100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2호	300	300	300
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1호	100	200	300
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	1,000	1,000	1,000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6호	50	70	100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7호	100	100	100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2호	100	200	3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	500	700	1,000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4호	100	200	300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5호	500	700	1,000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6호	500	700	1,000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5호	100	200	300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7호	500	700	1,000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8호	50	70	100

【일련번호 : 12 - 3】

처 분 명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560-4401~8, FAX : 560-2760)	
처분기준	기 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제6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설 정 년 월 일	- 「폐기물관리법」 1987년 4월 1일(2023년 12월 28일 최종변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1일(2022년 11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 청문 - 경고, 영업정지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7조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5제2항제1호	지정취소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 5 제2항제2 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 5 제1항제2 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 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 5제2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의 5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의 5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7조	허가취소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의3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 가연성·불연성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정한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마) 제9조제3항 각 호	영업	영업	영업	허가

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취소
(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여야 하는 자가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 월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 월	영업 정지 1개 월	영업 정지 3개월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 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6개 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법 제27조	경고	영업	영업	영업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6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경 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관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 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 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 5의4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제27조의2 제2항제3호	6개월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등록취소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	허가 취소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경고	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		영업정지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의 물건을 함께 신고 운반할 경우		1월	월	월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	법 제25조제2항제1				

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7호	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 9호	경고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비 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1 차	2 차	3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4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일련번호 : 12 - 4】

처 분 명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560-4401~8, FAX : 560-2760)	
처분기준	기 준	1. 「폐기물관리법」 :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제48조제1항제1~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제4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설 정 년 월 일	- 「폐기물관리법」 1991년 3월 8일(2024년 1월 30일 최종변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1일(2023년 9월 14일 최종변경)
	처리절차	적발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의견청취) → 조치명령 → 폐기물처리완료보고 접수 → 현장확인 → 조치명령이행완료수리 알림
처분절차	의견청취 절 차	조치명령 : 의견제출
	비 고	

산 림 정 원 과

【일련번호 : 13 - 1】

처 분 명	산지전용허가 취소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20조	
담당부서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 : 560-4795, FAX : 560-2782)	
처분기준	기 준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2020. 2. 18.,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2002년 12월 30일(2021년 6월 15일 최종변경)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청문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처분절차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 청 문
비 고		

【일련번호 : 13 - 2】

처 분 명	토석 채취 허가의 취소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31조	
담당부서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 : 560-4795, FAX : 560-2782)	
처분기준	기 준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2년 12월 30일(2021년 6월 15일 최종변경)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처분절차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 청 문
비 고		

식 품 위 생 과

【일련번호 : 14 - 1】

처 분 명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판매업 · 식품접객업의 허가취소 등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 제101조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식품지도팀, 식품유통팀(☎ : 560-4380 / 4330, FAX : 560-2756)	
처분기준	기 준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72조에 따른 폐기처분 (3)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공표 (4)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 (5)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6)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의 제조정지 (7)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8)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6년 5월 10일(2025년 1월 1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 청문 - 영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나. 식품소분업자
 - 다.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자
 - 마.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 나. 식품판매업소: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 다. 식품접객업소: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9. 4. 25.>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 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복합 찬기, 국·찌개·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7. 삭제 <2022. 4. 28.>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는 것		해당 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 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 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 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 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 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 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 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 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 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우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 첨가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 등록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을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1 개 월	품목 제조 정지 2 개 월
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 소 또는 영 업 소 폐 쇄 와 해 당 제 품 폐 기

과. 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
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
한 것

품목

제
조
정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목류

제
조
정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목류

제
조
정
지
3
개
월
과
해
당
제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1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15 일 시정명령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1 개 월 품목 제 조 정 지	품 폐 기 품목류 제 조 정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2 개 월 품목 제 조 정 지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 조 정 지 15 일	품목 제 조 정 지 1 개 월	품목 제 조 정 지 2 개 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 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 조 정 지	품목 제 조 정 지

		7 일	15 일
하.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 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 루를 포함한다)의 혼입	품목 제조 정지 7일 과 해당 제 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5일 과 해당 제 품 폐기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15일 과 해당 제 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 정지 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 정지 10일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영업허가 취 소 와 해 당 제 품 폐 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 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 개 월	영업정지 2 개 월	영업허가 취 소 와

	과 해 당 제 품 폐 기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해 당 제 품 폐 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 한 경우	영업정지 15 일 과 해 당 제 품 폐 기	영업정지 1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영업정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해당 식품 을 원 료로 하 여 제 조·가 공한	해당 식품 을 원 료로 하 여 제 조·가 공한	해당 식품 을 원 료로 하 여 제 조·가 공한

	영 업 소 의 영 업 등 록 취 소 및 해 당 제 품 폐 기	품 목 류 제 조 정 지 3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 목 류 제 조 정 지 1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한 것		식품제조 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 조 정	식품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 조 정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지
1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1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2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지
3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품목

제
조
정
지
3
개
월
과
해
당
제
품
폐
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7 일	품목 제조 정지 15 일
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로서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며.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버.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서. 그 밖에 가목부터 버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품목 제조 정지

			지 5 일	지 10 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및 법 제75조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삭제 <2019. 4. 25.>				
나. 삭제 <2019. 4. 25.>				

다. 삭제 <2019. 4. 25.>				
라. 삭제 <2019. 4. 25.>				
마. 삭제 <2019. 4. 25.>				
바. 삭제 <2019. 4. 25.>				
사. 삭제 <2019. 4. 25.>				
아. 삭제 <2019. 4. 25.>				
자. 삭제 <2019. 4. 25.>				
차. 삭제 <2019. 4. 25.>				
카. 삭제 <2019. 4. 25.>				
타. 삭제 <2019. 4. 25.>				
파. 삭제 <2019. 4. 25.>				
하. 삭제 <2019. 4. 25.>				
거.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임을 표시하 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	품목 제조 정지 2개 월
너. 삭제 <2019. 4. 25.>				
더. 삭제 <2019. 4. 25.>				
8.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 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 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75조 및 법 제76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 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 제조정지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시정명령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15일 영업정지 15일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령	1개월	2개월
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 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 조·가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 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의2.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및 법 제75 조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1호아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우	1개월	2개월	3개월
3) 별표 17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7 일	영업정지1 5 일
5) 별표 17 제2호바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7 일	영업정지1 5 일	영업정지 1 개 월
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 0 일	영업정지 15 일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 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3의3.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 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 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2개월	영 업 허 가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 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려가 있는 것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 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이물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로서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 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 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 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 하지 아니한 경우				
1) 식품운반업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 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 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3호아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일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4호가목·다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5호마목 또는 사목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위반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3) 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의3.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 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것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 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 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 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것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 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			

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2) 조리기구 등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2) 조리기구 등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을 초과한 것	폐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씻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2 일	영업정지5 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5 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2 일	영업정지3 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 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 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	영업허가 · 등록		

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사용한 경우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영업허가		

포함한다)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 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 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 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 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영업장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한 경 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 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 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과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별표 17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 · 4), 하목, 어목, 저목 또는 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별표 17 제7호허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우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 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별표 17 제7호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 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8호가목·다목·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 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 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 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 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 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로 진열·보관한 경우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 품의 조리·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별표 17 제8호하목 또는 거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 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 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2의2.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 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조리사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면허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거목1)·2) 또는 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일련번호 : 14 - 2】

처 분 명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 취소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0조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식품관리팀 (☎ : 560-4370, FAX : 560-2756)	
처분기준	기 준	「식품위생법」 제80조에 따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6년 5월 10일(2023년 5월1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청문
비 고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4. 조리사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면허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일련번호 : 14 - 3】

처 분 명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정지 등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조,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560-3253, FAX : 560-2756)	
처분기준	기 준	(1)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면허취소 (2)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 (4)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5)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6)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9년 2월 8일(2024년 7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 청문 - 과태료 부과, 경고, 개선명령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I.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II.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II. 개별기준

1. 숙박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2호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 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4호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법 제11조제1항제8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2. 목욕장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 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법 제1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 업 장 폐쇄명령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바)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종사자를 둔 경우 사)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 우		영업장 폐쇄명령			
아)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 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 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경고 또 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차)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 을 출입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신고된 명칭(상 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 종으로 오인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 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법 제11조제1항제 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우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 반하여 관계 행정 기 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진 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에 영업을 한 경우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이용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 업 장 폐쇄명령

경우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 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경우					
3) 별표 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 급가격 및 전체 이용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 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 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 득한 경우(나중에 발급		면허취소			

받은 면허를 말한다)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 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 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	법 제11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 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풍속영업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그 사 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 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면허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나) 이용사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 업 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 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3) 점빠기·긁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급가격 및 전체 미용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 받은 면허를 말한다)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취소	영업정지 2월 면허정지 6월	영업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중 업무를 한 경우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 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법 제11조제1항제8호				

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미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진 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 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 우	법 제11조제3항제1 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 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 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 호	영 업 장 폐쇄명령			

5. 세탁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 건조기가 부착된 세탁 용기계를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2) 드라이크리닝용 세 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 나 좁이나 곰팡이 등 이 생성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 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	법 제11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 호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 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법 제11조제3항제1 호	영 업 장 폐쇄명령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영 업 장 폐쇄명령			

6. 건물위생관리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	경고 또 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 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 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 호				
1) 유기용제를 사용하 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 계 공무원의 출입, 검 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 람을 거부·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 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 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	법 제11조제3항제1	영 업 장			

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호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총매출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100 이하	9,400
2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3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4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5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6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7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8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9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10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11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12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14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15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16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17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18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20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21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22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23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24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33	40,000 초과	2,849,000

【일련번호 : 14 - 4】

처 분 명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정지 등	
근거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560-3253, FAX : 560-2756)	
처분기준	기 준	(1)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3)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품목 등 제조정지 (5)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6)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 등 (7)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8)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2017년 4월 18일(2022년 3월 30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제조정지 : 청문 -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시정명령, 제조정지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

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떠한 위반행위든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6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10. 위생용품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대여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일 때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소 폐쇄일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라.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위생용품에 혼입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12. 영 제3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는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3.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II. 개별기준

1.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급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2) 그 밖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2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나.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 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 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 관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2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2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별표 2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3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2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반한 경우 3.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판매·대여한 경우 4.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위생용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나. 위생용품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 제16조, 제18조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 품목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 에 사용한 경우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제조정지 2개월
2)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	
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부족 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바. 별표 4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 지 15일	품목제조정 지 1개월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			

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 이상인 경우 2) 3개 미만인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8조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5.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시정명령	품목	품목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한 경우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3개월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속인 경우	법 제17조	영업소 폐쇄		
6의2.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7조	영업소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제17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 위생용품수입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 라. 가목 및 다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2) 그 밖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5일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2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나. 위생용품수입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4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2 제4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2 제4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 제4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나. 위생용품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품명 및 용도 중 어느 하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법 제17조	1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개월	4개월	폐쇄
다. 검사 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위생용품을 재수입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	
4.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수입·저장·진열·운반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16조, 제17조	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5.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위생용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에 사용한 경우				
2)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	
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마.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바. 별표 4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3개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법 제16조, 제17조	영업정지 5일 및	영업정지 10일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제품 폐기	해당제품 폐기	해당제품 폐기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가.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소 폐쇄		
6의2.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7조	영업소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제17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산정기준

가.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0 이하	2
2	20 초과 30 이하	4
3	30 초과 50 이하	6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2
2	20 초과 30 이하	4
3	30 초과 50 이하	6
4	50 초과 100 이하	12
5	100 초과 200 이하	14
6	200 초과 300 이하	16
7	300 초과 400 이하	19
8	400 초과 500 이하	24
9	500 초과 650 이하	31
10	650 초과 800 이하	39
11	800 초과 950 이하	47
12	950 초과 1,100 이하	55
13	1,100 초과 1,300 이하	65
14	1,300 초과 1,500 이하	76
15	1,500 초과 1,700 이하	86
16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7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8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9	2,700 초과 3,100 이하	118
20	3,100 초과 3,600 이하	124
21	3,600 초과 4,100 이하	142
22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3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4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5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6	6,700 초과	261

2. 산정방법

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경 제 정 책 과

【일련번호 : 15 - 1】

처 분 명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 560-3263,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8년 12년 31일(2014년 1월 2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구청 → 처분(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의견청취 절 차	○ 지정취소 :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15 - 2】

처 분 명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 560-3263,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참 고 사 항	
	설 정 연월일	1988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20년 3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 건 청 취 절 차	○ 영업정지 : 의견제출
비 고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	법 제17조제2	1개월	3개월

매한 경우	항제2호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	7일	1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	7일	1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호	7일	1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경고	1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일	1개월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일련번호 : 15 - 3】

처 분 명	담배소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28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 560-3263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3. 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담배사업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8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16년 3월 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15 - 4】

처 분 명	대부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2,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 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기 준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2년 8월 26일 법률제정(2016년 3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제2항제1호·제3~5호·제7~8호의 경우 : 청문 ○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비 고		

【일련번호 : 15 - 5】

처 분 명	대부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2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2,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의하여 다음 과태료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2년 8월 26일 법률제정(2017년 4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마.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5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의 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서.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8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어.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9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 를 방해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처.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0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일련번호 : 15 - 6】

처 분 명	복권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2,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1월 29일 제정(2019년 10월 8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제1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제2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라.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법 제36조	1차 위반: 500만원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마.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1,000만원
바.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아.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6호	1,000만원

【일련번호 : 15 - 7】

처 분 명	통신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 560-3265,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2조 별표3)에 의하여 다음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내용>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2년 3월 30일 제정(2016년 9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	2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2호	100	200	500

경우				
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4호	100	200	500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호	100	200	500
사.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6호	100	200	500
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2호	500	800	1,000
자.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3호	200	500	1,0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4호	200	500	1,000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5호	200	500	1,000
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6호	200	500	1,000
파.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5,000	8,000	10,000
하.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	법 제45조제	200	500	1,000

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3항제7호				
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50	70	100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1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1호	100	200	500
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2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2호	100	200	5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3호	1,000	2,500	5,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3호	200	500	1,000

【일련번호 : 15 - 8】

처 분 명	방문판매·전화권유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560-3265,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3조 별표4)에 의하여 다음 과태료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1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13년 5월 2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	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	200	500

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	200	500
라.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2	100	200	500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200	500	1,000
바. 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2항제2호	200	500	1,000
사. 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2항제3호	200	500	1,000
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2항제4호	200	500	1,0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5호	200	500	1,0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법 제66조제2항제6호	200	500	1,000

경우						
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3항제4호	100	200	500	
타.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	200	500	
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6조제2항제7호	200	500	1,000	
하.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100	200	500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8호	200	500	1,000	
너.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100	200	500	
더.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9호	200	500	1,000	
러.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4항	50	70	100	
머.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66조제1항제1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	200	500	
버.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66조제1항제2호	600	1,500	3,000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66조제 1항제2호	100	200	500
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66조제 1항제3호	1,000	2,500	5,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66조제 1항제3호	200	500	1,000

【일련번호 : 15 - 9】

처 분 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농수산팀 (☎ : 560-4450,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2(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 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10년 2월 4일 법률제정(2022년 12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	법 제18조제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우	항제1호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 우	법 제18조제1 항제1호				
1)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5)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6)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품목별 100만원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8)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 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9)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 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 렁쟁이, 전복, 방어 및 부 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품목별 100만원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 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 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 우	법 제18조제1 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	법 제18조제1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항제3호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1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2호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카.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타.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	법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8조제2 항제5호				

3.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
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
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의 금액	1)의 금액의 200퍼센트	1)의 금액의 300퍼센트

-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
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
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
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가공업자

기준액(연간 매출액)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억원 미만	20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50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0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250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400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500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600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	900	1,000
20억원 이상	800	1,000	1,000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다)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판매업자: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통신판매: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4.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라. 통신판매

1) 제3호라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마.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삭제 <2017. 5. 29.>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8)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챙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일련번호 : 15 - 10】

처 분 명	축산물판매업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신고취소, 영업소 폐쇄 등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47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 (☎ : 560-1903,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7조,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과징금의 금액기준), 제32조 별표 4 (과태료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3)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2년 1월 20일(2023년 01월 0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외부기관 이첩)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 청문 - 영업정지·과태료 : 의견제출
비 고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 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류 · 품목 제조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 · 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19. 3. 14.>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600	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3) 그 밖의 영업자		300	600	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400	600
4) 그 밖의 영업자		100	200	30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의 영업자		300	600	900
아.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자. 법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 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의2	300	400	500
차.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1) 도축업의 영업자		300	400	500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00	350	500
3)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	350	500
4)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	350	500
5)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의3			
1)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타.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호	50	100	150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4호	200	350	500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호의2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거.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100	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		30	60	90

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60	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너.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	40	60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	20	30
더.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20	40	60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350	500
머.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버.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서.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2	30	60	90
어.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2	50	100	150
저.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법 제47조	50	100	150

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제2항제10호의 3			
처.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3	30	60	90
커.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0호의4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3호	30	60	90
퍼.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350	500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	100	15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 12.>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및 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사.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아.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차.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카.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하고, 식용란 수집·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용란 수집·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타. 카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 법 제3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이물혼입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처분한다. 다만, 제2호의 개별기준에 이물혼입 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 (1)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이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과 직원교육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가 구비한 이물 검출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营业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러.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머.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	법 제27조			

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가축의 도살 전에 해당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위 1)부터 3)까지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1) 물세척시 제조·가공 기준에 따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1의2. 삭제 <2019. 4. 25.>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4) 삭제 <2023. 3. 2.>			
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면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3. 법 제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점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2014.2.19>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가. 도축업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물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0.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 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 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 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 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 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 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3)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제1호차목·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별표 12 제3호의2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1)부터 8)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14.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14의2. 법 제35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 4호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가.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14의3. 법 제36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 4호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의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만 해당한다)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제7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 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원료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원료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 반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 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 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 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4)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처리·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삭제 <2020. 4. 16.>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8)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우 다. 삭제 <2020. 10. 20.> 라. 삭제 <2020. 10. 20.>				
4의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4의3. 법 제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7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라.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6. 삭제 <2016.2.4.>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다. 삭제 <2016.2.4.>				

8.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별표 10 제3호가목3)라) 또는 제6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 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 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1호차목·카목·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제4호가목 및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 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 출납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제4호 바목·사목·자목·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 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제4호너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 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 항 중 제3호아목·자목·차목·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31조의4 위반			
가. 법 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2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제품폐기	제품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6.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20일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7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8.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9.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의 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제7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이물이 혼입된 것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운반업(차량 관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축산물운반업(차량 외 시설 관련 위 반)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축산물보관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 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 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 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 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 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 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 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호사목·아목·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경고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5) 제3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6)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제3호아목·차목·하목·거목·너목·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 (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제3호버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경고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일)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경고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3호의 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라. 식육축산물판매가공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6항·제7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취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4) 식육가공품에 2) 및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처리·	영업소 폐쇄와 해당		

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품 폐기		
4)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삭제 <2020. 4. 16.>			
6)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너.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일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가.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소 폐쇄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시설·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별표 13 제1호사목·아목·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2019. 4. 25.>			
라. 삭제 <2016. 8. 4.>			
마. 별표 13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바. 별표 13 제4호아목·자목·카목·타목·파목 또는 하목을 위반한 경우(자목, 카목, 또는 타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별표 13 제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해당 차량	영업정지

중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 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소 폐쇄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5호의 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 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삭제 <2019. 4. 25.>
- (3)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 (6)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7)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8)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 (1) 제1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차목·카목1)·카목2)가)·타목1)·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 (2) 삭제 <2019. 4. 25.>
-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7)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2) 삭제 <2019. 4. 25.>
-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1호가목·라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개별기준 라목의 표의

- 1) 제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 카목2)가), 타목1), 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 2) 삭제 <2019. 4. 25.>
-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7) 과징금을 채납 중인 경우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더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련번호 : 15 - 11]

처 분 명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취소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6,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4월 10일 법률제정 (2013년 1월 23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등록취소 : 청문
비 고		

【일련번호 : 15 - 12】

처 분 명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6,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붙임 : 과태료부과기준[별첨]
	참고사항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규칙
	설 정 년 월 일	1997년 4월 10일 법률제정(2017년 10월 31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 제출
비 고		

[별표 4] <개정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제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000 1,000	7,000 3,000	10,000 5,000
라. 법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의2	100	300	500
마. 법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의3	100	300	500
바. 법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의4	100	300	500
사. 법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의5	100	300	500
아. 법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호의6	100	300	500
자. 법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법 제52조제3항	100	300	500

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제2호의7			
차. 법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300	700	1,000
카. 법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8	100	300	500
타. 법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300	700	1,000
파. 법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9	100	300	500
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3호	100	300	500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경과일수 10일 이내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제3항제4호	10 20 30 50 80 100 200 300		
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5호	100	300	500
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6호	100	200	300

【일련번호 : 15 - 13】

처 분 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전통시장지원팀 (☎ : 560-3382,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 붙임 : 과태료부과기준[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10월 22일 법률제정(2013년 11월 2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 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 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300

【일련번호 : 15 - 14】

처 분 명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의2 「인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인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 560-4436 FAX : 560-2730)																		
처분기준	기 준	○ 유통법 및 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오전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번째 일요일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이상 위반</th></tr><tr><td>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매출 100억이상)</td><td>3,000</td><td>7,000</td><td>10,000</td></tr><tr><td>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매출 100억이하)</td><td>1,000</td><td>3,000</td><td>5,000</td></tr></table>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매출 100억이상)	3,000	7,000	10,00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매출 100억이하)	1,000	3,000	5,00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매출 100억이상)	3,000	7,000	10,00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매출 100억이하)	1,000	3,000	5,000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 법령 : 2013년 1월 23일 개정 - 조례 : 2013년 5월 16일 개정 - 시행규칙 : 2013년 5월 16일 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제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00	7,000	10,000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	3,000	5,000

청년 정책 일 자리 과

【일련번호 : 16 - 1】

처 분 명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36조, 제37조, 제50조	
담당부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 560-5805, FAX : 560-2731)	
처분기준	기 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제36조, 제37조, 제50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2.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3.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붙임 : (별표1)과태료부과기준, (별표2)행정처분기준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61년 12월 6일 법률제정(2024년 1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행정처분기준적용)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경고,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 등록취소 : 청문
비 고		

시행령 [별표1]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	2 차	3 차 이 상
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나.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2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다.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법 제50조제1항제3호	500만원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 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 우	법 제50조제1항제4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마.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1호			
1)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 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 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5만원	
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 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2호		50만원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3호			
1)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3)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0만원
		100만원
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4호	50만원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1.3.17.>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6개월	
나)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15일	사업정지1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6개월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5)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경우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7)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8)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경고	등록취소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0)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정 지6개월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사업정지1 개월	등록취소
12)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인정 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 0일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3 개월
나) 삭제 <2014.12.31.>				
다)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 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정 지6개월
13)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 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정 지6개월
14)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신고요건 또는 영 제21조에 따 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정 지6개월	
15) 삭제 <2014.12.31.>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사업정지1 0일	사업정지1 개월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1 개월	등록취소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바)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여 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등록취소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1 개월	사업정지2 개월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1 0일	사업정지1 개월
17) 삭제 <2014.12.31.>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정 지 6개월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 취소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경고	등록취소 (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6개월	
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23)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6개월
24)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나. 근로자공급사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경우	허가취소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 고	허가취소	
4)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취소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7)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			
○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 이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8)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에 따른 근로자공급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0)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근로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 국외 공급 근로자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 국외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등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킨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1)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경우			
○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대상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기 업 지 원 과

【일련번호 : 17 - 1】

처 분 명	승강기의 운행정지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및 제82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환경지원팀 (☎ : 560-2892, FAX : 560-2759) 기업지원과 점단기업지원팀 (☎ : 560-0973,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50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50조제2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82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91년 12월 31일(2018년 3월 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2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4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5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3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법 제82조제2항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 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 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제6호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 부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7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4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8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9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 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 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 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1호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 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 과하는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 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4호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 기 운영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5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5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 리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	법 제82조제4항	10만원	20만원	50만원

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제2호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6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폐.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7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8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 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5호			

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3호	10만원	20만원	50만원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8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6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7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일련번호 : 17 - 2】

처 분 명	계량제작·수리·증명업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76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환경지원팀 (☎ : 560-2892, FAX : 560-2759) 기업지원과 검단기업지원팀 (☎ : 560-0973,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1년 5월 10일(2017년 12월 1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등록취소 : 청 문 업무정지 : 의견제출
비 고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와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횡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4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등록·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해당 업무 일부정지	해당 업무 일부정지	등록·지정 취소 또는

설 및 검사설비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소 폐쇄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등록·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삭제 <2024. 7. 9.>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	법 제76조제1항제1호	150	300	500

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 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60	120	200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60 120 200		
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	60 120 2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	60	120	2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	60 120 200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	60	120	200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500		
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60 120 2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60	120	20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60	120	200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	법 제76조제2항제10호	60	120	200

하여 광고한 경우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1)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1호	60	120	200
		200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2호	60	120	200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3호	60	120	200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150	300	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	60	120	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	60	120	20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	법 제76조제1항제5호	150	300	500

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50	300	500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6호	60	120	2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7호	60	120	200
처. 삭제 <2024. 7. 9.>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	60	120	200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0호	60	120	200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1호	60	120	200
허.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2호	60 120 200		

【일련번호 : 17 - 3】

처 분 명	공장등록 취소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 : 560-0994, FAX : 560-2759) 기업지원과 검단기업지원팀 (☎ : 560-0972,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0년 2월 8일(2009년 2월 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처리대상 결정 ⇒ 청문통지서 발송 ⇒ 청문실시 ⇒ 처분 ⇒ 처분사항 통보
	의견청취 절 차	청문통지서 발송 ⇒ 청문실시 ⇒ 처분
비 고		

【일련번호 : 17 - 4】

처 분 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 : 560-0994, FAX : 560-2759) 기업지원과 검단기업지원팀 (☎ : 560-0972,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0년 2월 8일(2011년 4월 5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행위확인 청문통지서 발송 ⇒ 청문실시 ⇒ 처분 ⇒ 처분사항 통보
	의견청취 절 차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출) ⇒ 의견제출 검토 ⇒ 처분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사목·아목·타목·과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90	90	90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	법 제55조제2항제2호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90	90	9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3호	90	90	90
		100	100	1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4호	90	90	90
		100	100	100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5호	90	90	90
		100	100	100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	법 제55조제2항제6호	90	90	90
		100	100	100

상인 경우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7호	60 70	60 70	60 70
아. 삭제 <2015.6.30.>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9호	50	50	50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280 300	280 300	280 300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280 300	280 300	280 300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280	280	280
		300	300	300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	300	300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500	500	500
거. 법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 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0호	80	90	100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180	190	200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1호			
		40	40	40
		50	50	50

【일련번호 : 17 - 5】

처 분 명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30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4,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 라 함)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30조 [별표8], 제21조 [별표10]에 따라 처 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2)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3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1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취소 : 청 문 -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바.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나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4) 법 제5조, 법 제6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법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또는 제한 3일	또는 제한 10일	또는 제한 20일	또는 등록취소
7)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7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9)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9의2)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 외의 정량공급의 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9호 의2	경고 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9의3)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9호 의3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허가취소		
9의4)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법 제13조 제1항제9호 의4	허가취소			

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1)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3)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4)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6)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8)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0)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 제13조 제1항제20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한 3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또는 제한 6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또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1)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2)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1호의2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23) 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4)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않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3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다)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	법 제21조 제2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다.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times 0.18$$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종별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종	30톤 이하	3만원
2종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만원
3종	100톤 초과 500톤 이하	40만원
4종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60만원
5종	1,000톤 초과	80만원

【일련번호 : 17 - 6】

처분명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4,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4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7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3년 12월 31일 (2022년 5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호	150	220	300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호	150	220	300
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3호	150	220	300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1호	500	750	1,000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	500	750	1,000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4호	150	220	300
아.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6호		300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2호		200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7호	70	150	300
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	150	220	300
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9호	150	220	300
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0호		300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법 제73조 제4항제3호	100	150	200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1호		100	
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50	220	300
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150	220	300
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150	220	300
버.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150	220	300
서.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73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150	220	300
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150	220	300
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6호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7호	100	150	200
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8호	100	150	200
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9호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			20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0호	100	150	200
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 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0호의 2	100	150	200
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 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 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1호		200	
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 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 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2호		200	
로.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 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2호	20	50	100
모.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 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800	
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법 제73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4호	500	750	1,000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150	220	300
조.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3호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경고	50	100
나) 그 밖의 경우		100	150	200
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4호	100	150	200
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8호		300	
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	법 제73조 제3항제19호	150	220	300

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경우				

【일련번호 : 17 - 7】

처 분 명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2,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5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7조 [별표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5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3년 12월 31일(2022년 5월 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승계자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1호	1,000	1,200	1,500
나.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1,500	1,700	2,000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2)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3,000	
라.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1,500	2,200	3,000
마. 법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의2	1,500	2,200	3,000
바. 법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1호의2	500	700	1,000
사. 법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의3	1,500	1,700	2,000
아. 법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의4	1,500	2,200	3,000
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법 제54조	1,500	1,700	2,000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제1항제3호			
차.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1,500	1,700	2,000
카.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2호	500	700	1,000
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1,500	2,200	3,000
파.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2호	1,000	1,200	1,500
하.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3호	1,000	1,200	1,500
거. 시공자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4호	1,000	1,200	1,500
너.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5호	1,000	1,200	1,500
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법 제54조	1,000	1,200	1,500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4조 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6호			
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5조 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7호	1,000	1,200	1,500
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8호	1,000	1,200	1,500
버.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2	1,500	2,200	3,000
서.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3	1,500	2,200	3,000
어.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4	1,500	1,700	2,000
저.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5	1,500	1,700	2,000
처.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6	1,500	2,200	3,000
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1,500	1,700	2,000
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1,500	1,700	2,000

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의2	1,500	1,700	2,000
허.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8호	1,500	1,700	2,000
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5항제1호	150	200	300
노.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4항	250	350	500
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1,500	2,200	3,000
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2	500	600	750
모.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3	500	700	1,000
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1,500	2,200	3,000
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3호	500	700	1,000
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4호	500	700	1,000

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 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1,500	2,200	3,000
초.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 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1,500	2,200	3,000
코.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 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 전관리업무 대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 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00	1,700	2,000
2)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스사 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 설설치자의 종사자			300	
토. 법 제26조제5항(법 제39조의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 2	1,500	2,200	3,000
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4호의2	500	600	750
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사 또는 가 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법 제54조 제6항		200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3	1,500	2,200	3,000
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8호의2	1,000	1,500	2,000
두. 법 제29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4호	1,000	1,500	2,000
루. 법 제30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5항제2호		150	
무. 법 제30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6호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00	
2)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00	
부. 법 제30조의5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5호		800	
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41조 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법 제54조 제2항제9호	1,000	1,200	1,500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우. 법 제43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7호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000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공사		500	

【일련번호 : 17- 8】

처 분 명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 · 사업정지 ·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5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4,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4조, 제35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7조 별표 2, 제42조 별표2 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2) 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12월 29일(2022년 8월 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등록취소 : 청 문 - 사업정지, 과징금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	법 제13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 제1항 제6호	1개월	3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이하 "제조등"이라 한다)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 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의2)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	법 제13	사업정지	등록취소		

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 인을 훼손한 경우	조 제1항 제13호	3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 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 조 제1항 제1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5) 법 제39조에 따른 행 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 업시설을 설치·개조하 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 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 치·개조하거나 그 사실 을 알면서도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 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면서 정량 미 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 업시설을 설치·개조하 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설치·개조한 영 업시설을 양수·임차하 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나 「계량에	법 제13 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경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	법 제13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 제2항 제6호	1개월	3개월		
7)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1)에 해당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2)에 해당한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 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 나 설치·개조된 영업시 설을 양수·임차하여 가 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등록취소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1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영업장 폐쇄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영업장 폐쇄			
3) 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영업장 폐쇄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영업장 폐쇄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5호	영업장 폐쇄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영업장 폐쇄			
7)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9)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					
	영업장 폐쇄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3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제4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7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 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 나 설치·개조된 영업시 설을 양수·임차하여 가 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 발유(1호)로 판매한 경 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 동차용 휘발유를 혼합 한 가짜석유제품(자동 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 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 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의2) 가목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 12의2)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바)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1)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만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보관한 자가 그 석유를 대신 공급하도록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타인의 석유를 자신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공급한 경우. 다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석유를 자신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않고 도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7)의 방법으로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주유소 밖에서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이동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석유판매업별로 석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 그 밖의 경우		1개월	3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가	법 제34조제1호	등록취소			

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호의 2 법 제34조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법 제34조 제3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등록취소 사업정지	사업정지

경우			3개월	6개월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4호	등록취소			
6)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5호	등록취소			
7)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34조 제6호	등록취소			
8)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7호	등록취소			
9)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9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8조제1항에 따	법 제34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조 제10호	3개월	6개월		
12)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1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 수출 입업 자	국제 석유 거래 업자	석유판매업자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 인 석 유제품 판매업 자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 1항 제 3호	-	-	-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 1항 제 3호	-	-	-	-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8백만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 1항 제 1호 부터	10억원 (용제 정제	1억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제 3 호 까지	업자2 억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원	1억5 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 지 아니한 석유제품 을 판매 또는 인도 하거나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품질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원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4천만 원	
7) 법 제27조에 따른 품 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 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원
8) 법 제29조제1항제1 호를 위반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 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 에 등급이 다른 자 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 품[자동차용 휘발 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경우와 자동차 용 경유에 자동차 용 휘발유를 혼합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	5천 만원	3천 만원	4천 만원	1천 만원

한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 당한다)의 경우 나) 그 밖의 가짜석유 제품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2억원	2억원	—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9) 법 제29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하여 가 짜석유제품을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 로 석유제품·석유화 학제품·석유대체연 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경 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3호까 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2 억원)	1억5 천 만원	2억원	1억5 천 만원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원
11) 법 제39조에 따 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 게 판매하는 경우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5억원 (용제 정제 업자	1억원	1억원	1억원	3천 만원	2천 만원	2천5 백 만원	1천 만원

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 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1억원)							
(2) 그 밖의 경우		10 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6천 만원	4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업 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6천 만원	4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 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 제, 윤활유, 윤활 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 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 매하는 행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 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 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1억5 천 만원	3천 만원	1천5 백 만원	2천 만원	8백 만원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 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 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 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 만 해당한다)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5천 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억원	1억5천 만원	1억원	3천만원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 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6)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 우	법 제35조 제1항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 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1억원	3천 만원	2천 만원	1천 만원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그 밖의 경우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지상 원유 저장시설을 말하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윈(기한부 어음 금리)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석유비축량(석유대체연료 비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석유비축의무량(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한다)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프로판
-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대체연료. 다만,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대체연료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일련번호 : 17 - 9】

처 분 명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4,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제49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별표6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12월 29일(2017년 9월 2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경고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경고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경고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경고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의 판매가격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 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여 보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경고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법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다른 사업의 개 시·휴업 및 폐업 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49조 제2항 제2호				
3) 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 류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의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 용제 대리점				주유소 · 용제 판매소 ·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신고대상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 회 이 상 위 반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 회 이 상 위 반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 조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50 0 만 원	10 0 만 원	20 0 만 원	30 0 만 원	30 0 만 원	25 0 만 원	35 0 만 원	500 만 원	500 만 원	50 만 원	10 0 만 원	20 0 만 원	200 만 원

나 거짓으로 변경등 록 또는 변 경 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2 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 · 휴 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0 0 만 원	20 0 만 원	30 0 만 원	30 0 만 원	10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0 0 만 원	10 0 만 원	20 0 만 원	300 만 원	300 만 원	30 만 원	50 만 원	10 0 만 원	100 만 원
3) 법 제38 조 제1 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 고 의 경우 (2) 그 밖의 보 고 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 류가 증명 서 류 로 확인 되는 경우 (가) 주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경 고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 만 원	15 0 만 원	경 고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경 고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0만 원	경 고	20 0 만 원	40 0 만 원	60 0 만 원	경 고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만 원	150 만 원
		경	15	20	25	경	50	10	15	경	15	200	250	경	15	25	50

단 위 보고의 경우		고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고	만 원	0 만 원	0 만 원	고	0 만 원	만원	만원	고	만 원	만 원	만원
(나)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경 고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 0 만 원	40 0 만 원	60 0 만 원	경 고	50 0 만 원	750 만원	1천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 만 원	150 만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25 0 만 원	50 만 원	10 0 만 원	15 0 만 원	15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50 만원	250 만원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50 만원
(나)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20 0 만 원	40 0 만 원	60 0 만 원	60 0 만 원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50 만 원	10 0 만 원	15 0 만 원	150 만원
4) 법 제38 조의2제1항 을 위반하 여 석유제 품의 판매 가격을 보 고하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고 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50 0 만 원	75 0 만 원	1 천 만 원	1 천 만 원	10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0 0 만 원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원	1천만 원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 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 회 이 상 위 반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 회 이 상 위 반	1 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 법 제12	법	30	45	60	60	10	20	30	30	10	150	200	200	10	15	20	20

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 · 휴 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우	제49조 제2항 제2호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 만 원	0만 원
2) 법 제32 조제2항 및 법 제33조 제1항 후단 에 따른 변 경 등 록 을 하지 않거 나 거짓으 로 변경등 록을 한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75 0 만 원	1 천 30 0 만 원	2 천 만 원	2 천 만 원	25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50 0 만 원	10 0 만 원	200 만 원	300 만 원	300 만 원	10 0 만 원	20 0 만 원	30 0 만 원	30 0만 원
3) 법 제38 조 제1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 고를 한 경 우 가) 보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 주 단 위 보고 의 경우 (2) 그 밖 의 보고 의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20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50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25 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75 만 원
		75 0 만 원	1천 30 0만 원	2 천 만 원	2 천 만 원	50 0 만 원	75 0 만 원	1 천 만 원	1 천 만 원	20 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600 만 원	10 0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00 만 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경고	25만원	50만원	75만원	
(나) 그 밖의 경우	경고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경고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경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750만원	
(나) 그 밖의 경우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1) 명백 한 오기 또는 계 산상 오 류가 증 명 서 류 로 확인 되는 경 우				
(가)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나)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나)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나)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 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경우	법 제49조제 1항제2호	3백만원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터 이상 20킬 로리터 미 만	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제 2호를 위반하여 가 짜석유제품임을 알 면서 사용하거나 법 제10조 및 제33조 에 따라 등록·신고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 품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49 조 제 1 항 제3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 원	2천만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				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일련번호 : 17 - 10】

처 분 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 560-4461, FAX : 560-2759)	
처분기준	기 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5]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0년 6월 29일 (2019년 10월 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부과)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적용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4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호				
1)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2) 그 밖의 조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50	200	25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 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2호	150	200	250	300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3호	150	200	250	300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1호	500	700	900	1,000
마. 공공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4호	150	200	250	300
바. 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법 제78조 제4항제5호	150	200	250	300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사. 사업주관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6호	150	200	250	300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78조 제1항제1호	1,000	1,400	1,800	2,000
자.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법 제78조 제3항	250	350	450	500
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7호	150	200	250	300
카.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8호	150	200	25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	150	200	250	300
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법 제78조	1,000	2,000	2,000	2,00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하.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명 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2호	500	700	900	1,000
거.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 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2		300		
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3		300		
더.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	200	250	300
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	200	250	300
머.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78조 제1항제3호	1,000	1,400	1,800	2,000
버.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한 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우	법 제78조 제4항제10호		300		
서.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78조	150	200	250	300

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 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11호				
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3호	500	700	900	1,000
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2호	150	200	250	300

교 통 정 책 과

【일련번호 : 18 - 1】

처 분 명	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 560-4864, 4863, 4869,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 노선연장·단축 또는 변경 (2) 운임·요금조정, 운송약관변경 (3)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4)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6)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의 운행 ※ 운송사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1년 12월 30일(2013년 3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 또는 위반사항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사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통지 → 의견청취 → 과태료 부과(납부기일 30일), 이의신청기간 등 명시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 관할법원 송부 및 감액 ※ 단,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시 의견청취 절차 이행
비 고	법 제33조의 자동차대여사업자 개선명령 처분절차 위와 동일함.	

【일련번호 : 18 - 2】

처 분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등록취소 등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64, 4863, 4869, FAX :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처분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1년 12월 30일(2021년 7월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취소사유발생 ⇒ 사전통지 ⇒ 의견청취 (청문,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청 문 - 명령 또는 정지 : 의견제출
비 고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3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 신규 면허, 신규 허가를 받거나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75일)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나.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0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3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6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8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8 다.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 송사업의 경우: 12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4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 인 경우: 8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0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경우: 4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10			
라.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 (30일)		
2) 2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 (60일)		
3) 3건 이상의 교통사고	감차명령		
마.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1) 40명 이상	감차명령 (10대 감차)		
2)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 (8대 감차)		
3)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6대 감차)		

4) 10명 이상 19명 이하		감차명령 (4대 감차)		
5) 8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80일)		
6) 5명 이상 7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20일)		
7) 2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60일)		
바.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1) 40명 이상		감차명령 (5대 감차)		
2)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 (4대 감차)		
3)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3대 감차)		
4)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20일)		
5) 6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60일)		
4.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 또는 법 제49조의3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 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4호	감차명령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4조, 제28조, 제 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5호	사업면허취 소·사업등록 취소·사업허 가취소		
6.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	법 제85			

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	조 제 1 항 제6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 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7. 법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 소		
법 제85조 제1항 제7호	사업일부정지 (15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45일)	
	사업면허취			

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사업등록 취소·사업허 가취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 조 제 1 항 제8호	사업면허취 소·사업등록 취소·사업허 가취소		
9.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나. 신설된 노선 또는 운행계통에서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9호	사업면허취 소 노선폐지명 령 또는 감 차명령		
10. 법 제8조, 제49조의6 또는	법 제85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조 제 1 항 제10호			
가.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신고한 운임·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운행정지 (5일)		
11. 법 제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위반한 경우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위반한 경우		(3일)	(5일)	
13. 법 제12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1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4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5.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5호			
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다.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차대여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법 제16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6호			
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차명령		
다.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라.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			
마.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면허취 소	
17.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7호	운행정지 (10일)		
1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8호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	법 제85	감차명령		

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조 제 1 항 제19호			
20.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 제 1 항 제20호	감차명령	노선폐지명령	
21. 법 제21조제8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 1 항 제20호의 4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2.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 1 항 제20호의 5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2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 제 1 항 제20호의 6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24.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 1 항 제20호의 7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25.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법 제85조 제 1 항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제20호의 8			
26.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 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운행정지 (20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아.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자.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차.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카.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타.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파.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하.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너.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러.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머.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서.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터.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사업용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 2) 사업용 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left(\frac{\text{위반건수}}{\text{보유대수}} \times 10 \right)$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left(\frac{\text{위반건수}}{\text{보유대수}} \times 10 \right)$ 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	감차명령 감차명령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우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27.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28. 법 제25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29.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의2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30.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의3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31.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효기간 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4호	사업등록취소		
32.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5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3.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6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3의2.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6호의2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4.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2호의2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5.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2호의3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36. 법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2호의4	사업일부정지 (30일)		
37. 법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2호의5	사업일부정지 (20일)		
38.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보조 또는 융자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2호의6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39.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3호	사업일부정지 (5일)		
40.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	법 제85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조 제 1 항 제34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41.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35호			
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		
나.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		
42.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 조 제 1 항 제36호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4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37호	사업면허취소		
44.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38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45.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39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46.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40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47.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41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감차 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5.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 나.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 다.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가. 사고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사고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사고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text{나. 위반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위반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위반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9.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10.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1.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위 표 위반내용란의 제6호나목, 제9호나목, 제12호가목·라목, 제16호나목·라목 또는 제42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위반내용란의 제3호나목에 따른 감차명령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3.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5)에 따라 처분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6호마목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15.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10호다목, 제17호 및 제39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6. 위반내용란의 제19호에 따른 감차명령은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한다.

나. 터미널사업

위 반 내 용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1호	사업면허취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호	사업면허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85조	사업면허취소		

제36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제1항제5호			
4.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사업면허취소		
5. 법 제37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 제1항제7호	사업면허취소		
6. 터미널사업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 제1항제8호	사업면허취소		
7.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8.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9.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법 제85조 제1항제27호			

않은 경우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1.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8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9호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3.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0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1호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5.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2호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6.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8호	사업면허취소		
17.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9호	사업면허취소		

【일련번호 : 18 - 3】

처 분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64, 4863, 4869,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처분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1년 12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징금 : 의견제출
비 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동 차 대 여 사 업	플 래 트 폼 운 송 사 업 · 플 래 트 폼 중 개 사 업
			시 내 버 스 · 농 어 촌 버 스 · 마 을 버 스	시 외 버 스	일 반 택 시	개 인 택 시	전 세 버 스	특 수 여 객	수 요 응 답 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	법 제85조제1항 제3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illegible]

7) 플랫폼운송사

[illegible]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경 우에는 비교예 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10명 이상 19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2) 6명 이상 9 명 이하		800		200	200	800	400	200		
3. 법 제4조, 제28 조 또는 제49조 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 거나 등록한 업 종의 범위·노선 ·운행계통·사 업구역·업무범 위 및 면허·허 가기간(여객자동 차운송사업 한정 면허와 플랫폼운 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 등을 위반하 여 사업을 한 경 우	법 제85 조제1항 제6호									
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나.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가 면 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 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우										
다. 여객자동차운	1차			40	40			40		
송사업자가 면	2차			80	80			80		
허를 받은 사	3차 이상			160	160			160		
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										
우										
라. 한정면허를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받은 여객자동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차운송사업자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및 플랫폼운송										
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										
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마. 면허 또는 허	1차	10	10	10	10	20	20	10	20	10
가를 받거나	2차	15	15	15	15	30	30	15	30	15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										
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자가 그 사업										
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										
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										

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차 2차					120 240				
4. 법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	법 제85조제1항 제7호	1차 2차 3차 이상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18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 사업의 면허기 준, 등록기준 또 는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 한 휴게실 등 부 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8조, 제49 조의6 또는 제 49조의13을 위 반하여 운임·요 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 우 또는 1년에 3 회 이상 6세 미 만인 아이의 무 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 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40 80 160	20 40 80		40 80 160	40 80 16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	1차 2차	20 30	20 30				20 30		

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차 이상	60	60					6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10					10		
6. 법 제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대여약관 또는 플랫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15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18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	법 제85조제1항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차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120	120		120		
	2차					180	180		180		
	3차 이상					360	360		360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150	

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 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라. 노후차의 대 체 등 자동차 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 하지 못한 경 우.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 이 현저히 곤 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차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 획 변경의 인 가를 받지 않 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하 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 의로 운행시간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 획 등 사업계 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송사 업만 해당한 다)	1차 2차									100 150

사. 그 밖에 사업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10
계획의 내용을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위반한 경우											
8. 법 제13조를 위	법 제85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반하여 신고하지	조제1항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않고 여객자동차	제14호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운송사업을 관리											
위탁하거나 운송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											
한 경우											
9. 법 제14조(법	법 제85										
제35조 및 제49	조제1항										
조의9에서 준용	제15호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											
하여 인가를 받											
지 않거나 신고											
를 하지 않고 여											
객자동차운송사											
업, 자동차대여											
사업 및 플랫폼											
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하거나 법											
인을 합병한 경											
우											
가. 법 제14조제1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항(법 제35조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및 제49조의9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											
지 않고 여객											
자동차운송사											
업(개인택시운											
송사업은 제외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 플랫폼 운송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9의2.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6호 1차 2차				180 360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7호	20	20	10	10	20	20	10		
1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법 제85조제1항 제18호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1차	60									
	2차	120									
	3차 이상	180									
나. 법 제18조제3항에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12.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	1차	500	500	360	360	500	360	360		360
		2차	1,000	1,000	720	720	1,000	720	720		720
13. 법 제21조제8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4	1차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14. 법 제21조제	법 제85	1차					180				

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 하지 않거나 운행 기록증을 부착하 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조제1항 제20호 의5	2차 3차 이상				360 720			
15.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 업자가 법 제21 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 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 반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0호 의6	1차 2차	360 720	360 720		360 720			
16. 운송사업자(자 동차 1대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 객자동차운송사 업자 및 개인택 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 랫폼운송사업자 가 법 제21조제 12항 전단(법 제 49조의9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운수종사 자의 음주 여부 를 확인하지 않 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0호 의7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17. 운송사업자(자 동차 1대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	법 제85 조제1항 제20호 의8	1차 2차 3차 이상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8.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버스 및 마을 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 를 위탁한 자 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 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이 단 독으로 실시하 거나 관할관청 과 조합이 합동 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 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 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4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 차 질서를 문 란하게 한 경 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4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 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 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 기가 정상적으 로 작동되지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 하차문이 있	1차	360	360				360		
는 노선버스	2차	720	720				720		
(시외직행, 시	3차 이상	1,080	1,080				1,080		
외고속 및 시									
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									
객자동차에 압									
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									
장치를 설치하									
지 않거나 작									
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한 경우									
아. 차실에 냉방	1차	60	60	60	60	60	60	60	
· 난방 장치를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설치하여야 할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자. 차 안에 안내	1차	100	100				100		
방송장치 및	2차	200	200				200		
정차신호용 버									
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									
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차. 차내 안내방	1차	10	10				10		
송 실시 상태	2차	15	15				15		
가 불량한 경									
우									

카.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타.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360			360			
	2차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1202	1202			1202		1202	
	2차	40	40			40		4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 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30	30	30	30	30	30	30	3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러. 차량 정비, 운	1차			20	20			20	20

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차			40	40			40	40
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1차 2차			180 360					180 36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 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 치 및 사용방 법 등 안전사 항에 관한 안 내 방송 자료 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 우									
어. 전세버스운송 사업 운수종사 자가 대열운행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 적지로 이동하 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 로, 자동차전용 도로 등에서 「도로교통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 지 않도록 지 도·감독하기 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저. 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로 하여 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 · 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터. 운송사업자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1차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9.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2호	1차 2차 3차 이상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20. 법 제25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호	1차 2차 3차 이상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30 60 90	
21.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호의2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22.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호의3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23.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법 제85조제1항 제25호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않고 자동차대여 사업을 관리위탁 하거나 자동차대 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 한 경우																				
24. 법 제34조제3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자가 사업용 자 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6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24의2. 법 제34조 의2제2항을 위반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운 전자에게 자동차 를 대여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26호 의2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25. 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른 조 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2호 의2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26. 법 제49조의6 제4항 또는 제 49조의13제6항 을 위반하여 운 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 을 체결할 때 여 객에게 받을 운 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2호 의3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27. 법 제49조의 11제2항을 위반	법 제85 조제1항	1차			360	360														

하여 동일한 차 량으로 둘 이상 의 운송가맹점으 로 가입한 경우	제32호 의4											
28. 법 제49조의 11제3항을 위반 하여 상호를 변 경하거나 상호변 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2호 의5	1차				240						
29.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 는 융자금을 보 조 또는 융자받 는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한 경 우	법 제85 조제1항 제32호 의6	1차 2차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180 360	
30. 1년에 3회 이 상 법 제79조제 1항에 따른 보고 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3호		20	20	20	10	20	20	20	20		
31. 법 제79조제2 항에 따른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85 조제1항 제34호											
가.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30 60 9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나. 질문에 응하 지 않거나 거 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차 2차	40 80	40 80	40 80	40 80	40 80	40 80	40 80	40 80	40 80	
32. 법 제84조에	법 제85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제1항 제36호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3.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38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의 액 수			
		시 외 버 스 운 송 사 업 (운행형태별)			농어촌 버스운 송사업
		고 속	직 행	일 반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3,600	2,400	1,200	1,200
2) 5명 이상 7명 이하		2,400	1,600	800	8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800	4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400	1,600	800	800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400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 제15호 및 제18호바목·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	인구 30만 명 이상 100만명 미 만의 행정 구역	인구 2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 구 2 만 명 미 만 의 행 정 구역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2.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3.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22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 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 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 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 사를 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 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28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 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29호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7.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 약관을 시행한 경우	법 제85 조 제 1 항 제30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 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법 제85 조 제 1 항 제31호					

은 경우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 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 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 을 징수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 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 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9.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 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5 조 제1항 제32호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 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 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비고: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을 기준으로 한다.

3. 플랫폼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	240
2.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 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	100
3.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 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20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	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	100

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	360
7.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	50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	360

【일련번호 : 18 - 4】

처 분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560-4864, 4863, 4869,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61년 12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사유발생 → 의견진술통지 → 구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 처분(과태료부과)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호	5	10	10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2호	500	750	1,00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2호	10	15	20
마. 법 제1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3호	50 20	75 30	100 50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	500	1,000	1,000
사. 법 제21조제6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1호	20	30	50
아. 법 제21조제7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2호	20	30	5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	20	30	50
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카.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3	360	720	1,000
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4	540	1,000	1,000
파.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4호	50	75	100
하.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5호	50	75	100
거.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	50	50	50
너.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	10	15	20
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20	20	20
러.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7호의2 ·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더.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10	50 10	50 10
버.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서.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 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4항	3	5	10
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200	300	500
저.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 2	300	400	500
처. 법 제34조의5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법 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 3	300	400	500
커.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9호	100	150	200
터.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법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5	300	300	300

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6	400	400	400
허. 법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20	20	20
2) 법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20	20	20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경우		20	20	20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	20	20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20	20	20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10	10	10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 안전운행을 위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	50	50
나) 가)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10	10

8)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0	15	20
고.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0호	100	150	200
노.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1호	200	300	500
도.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로.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5호	500	750	1,000
모.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2호	25	50	50
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3호	50	75	100
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4호	50	75	100
오.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5호	500	500	500
조.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6호	500	500	500

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모목 및 보목의 경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련번호 : 18 - 5】

처 분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벌점 부과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64, 4863, 4869,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제85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별표4에 따라 처분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9년 5월 27일(개정 2014. 1.28.)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 행정처분→벌점부과→최근 2년 동안의 벌점합계 기준 초과 → 행정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청 문 - 명령 또는 정지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18 - 6】

처 분 명	화물자동차 운수(운송, 주선, 가맹) 사업의 허가취소 등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7조,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9조의4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51, 4868, 4866,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 기준에 따라 처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3」 기준에 따라 처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별표4」 기준에 따라 처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8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실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청문 또는 의견서 제출
비 고	2021.7.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변동사항 다수 발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21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및 제8호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한

다.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바.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로서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 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2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2호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2차: 허가취소
4.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3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5.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허가취소
6.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	법 제19조제1항 제4호의2	○ 사업 일부정지(30일)

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7. 법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4호의3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8.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 제5호	○ 허가취소
9.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6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10.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주고 받은 경우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 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사.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아. 삭제 <2020. 6. 16.>

자. 삭제 <2020. 6. 16.>

차. 삭제 <2020. 6. 16.>

카.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타.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일부정지(1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않은 경우 너.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더.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러.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며.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버. 법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서.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
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
사하게 한 경우

어.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
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
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
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저.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
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

- 1)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간 위
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 2)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 위
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
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사업 일부정지(10일)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
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1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
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frac{\text{화물자동차의 대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4)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 $\frac{\text{위반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1대 미만이면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감차 조치 ○ 허가취소
1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의2	○ 1차: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 의무미이행률×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 의무미이행률×60일) ○ 3차 이상: 감차 조치(직접운송 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12.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의4	○ 허가취소
1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8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1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8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1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9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16. 법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9호의2	○ 허가취소
17.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허가취소
18.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사업 일부정지(75일)

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2)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지수가 6에 이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3)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지수가 8에 이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4)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2건 ○ 3건 이상 19.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 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법 제19조제1항 제12호의2	○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1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감차 조치 ○ 허가취소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 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 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

21.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2호의3	고의무미이행률×30일) ○ 1차: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 의무미이행율×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 의무미이행율×2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30일)
22.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 허가취소

※ 비고

1.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2.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한다.

3.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교통사고지수=

$$\left(\frac{\text{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text{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 \frac{\text{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text{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right) \times 10$$

$$\text{나. 위반지수} = \left(\frac{\text{변경 전 위반 건수}}{\text{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 \frac{\text{변경 후 위반 건수}}{\text{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right) \times 10$$

4.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

하여 처분한다.

5. 위 표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 직접운송 의무미이행률, 신고의무미이행률 및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가.

$$\text{직접운송 의무미이행률} = \frac{\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금액}}{\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times 0.5 + \frac{\text{운송사업자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text{운송사업자의퇴계약 직접운송금액}}{\text{운송사업자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times 0.5$$

$$* \left(\frac{\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금액}}{\text{화주의퇴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right) \text{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text{나. 신고의무미이행률} = \frac{\text{실적신고대상금액} - \text{실적신고금액}}{\text{실적신고대상 금액}}$$

$$\text{다.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 = \frac{\text{최소운송의무금액} - \text{운송계약금액}}{\text{최소운송의무 금액}}$$

6. 위 표 제18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8호나목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빈번한 교통사고의 건수에 합산하여 처분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12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 허가취소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 1차: 사업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4.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 1차: 사업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5.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	○ 사업정지(30일)
6.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5호	○ 1차: 사업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7.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다.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마. 삭제 <2020. 6. 16.> 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차: 허가취소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8.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삭제 <2020. 6. 16.> 마. 삭제 <2020. 6. 16.> 바.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	법 제27조제1항제7호	○ 사업정지 ○ 사업정지(10일)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사업정지(10일)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사.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3차 이상: 사업정지(30일)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정지(30일)
9. 법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60건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사업정지(30일) ○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 사업정지(30일)
1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20일)

12.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9호	○ 3차 이상: 사업 일 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허가취소

※ 비고

위 표 제11호에 따른 실적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text{신고의무미이행률} = \frac{\text{실적신고대상금액} - \text{실적신고 금액}}{\text{실적신고대상 금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12. 3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사업 전부정지로 인하여 운송가맹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 3)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로 한다.
-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 5)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 제1호	○ 허가취소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법 제32조제1항 제3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차: 감차 조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4호	○허가취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5호	○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6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7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8.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 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7호의2	○ 사업 일부정지(30일)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8호	○ 사업 전부정지(30일)
10.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 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 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 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 한 경우		○ 사업 전부정지(10일)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 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 우		○ 사업 전부정지(10일)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 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

한 경우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사.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

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전부정지(1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카.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타.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일부정지(10일)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한 경우 하.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의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2)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frac{\text{위반 건수}}{\text{직접 소유 대수}} \times 10$ 4)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 $\frac{\text{위반 건수}}{\text{직접 소유 대수}} \times 10$ 거. 법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사업 일부정지(30일) ○ 사업 일부정지(60일) ○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1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사업 전부정지(10일)
12.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1호	○ 허가취소
1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	법 제32조제1항제12호	

계 한 경우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직접 소유 대수}} \times 10$$

2)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게 된 경우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75일)

○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미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직접 소유 대수}} \times 10$ 3)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이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직접 소유 대수}} \times 10$ 4) 5대 미만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다음에 이르게 된 경우 ○ 2건 발생 시 ○ 3건 이상 발생 시 14.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5.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3호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감차 조치 ○ 사업 전부정지(9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 무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 무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비고

1.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2. 교통사고지수 산정 시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한다.

3.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교통사고지수=

$$\left(\frac{\text{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text{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 \frac{\text{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text{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right) \times 10$$

2) 위반지수= $\left(\frac{\text{변경 전 위반 건수}}{\text{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 \frac{\text{변경 후 위반 건수}}{\text{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right) \times 10$

4.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5. 위 표 제13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6. 위 표 제13호나목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빈번한 교통사고의 건수에 합산하여 처분한다.

7. 위 표 제15호에 따른 실적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text{신고의무미이행률} = \frac{\text{실적신고대상금액} - \text{실적신고금액}}{\text{실적신고대상 금액}}$$

【일련번호 : 18 - 7】

처 분 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51, 4868, 4866,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명함.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8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실사조사 → 개선명령 → ① 불이행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서 제출) → 처분 → ② 이행 : 미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서 제출(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시)
비 고	2021.7.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변동사항 다수 발생)	

【일련번호 : 18 - 8】

처 분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51, 4868, 4866,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법 제21조 규정 준용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거 법 제21조 규정 준용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8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실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청문 또는 의견서 제출
비 고	2021.7.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변동사항 다수 발생)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2호다목3) 및 같은 호 더목3)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text{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times \frac{\text{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text{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2천 만원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화주 및 위·수탁차주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징 금 의 금 액			
		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화물 자동 차	화물 자동 차
		일 반	개 인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60	30	-	-
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 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60	60	-	-
다.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 를 거부한 경우		20	10	-	-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 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20	10	-	-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2차 위반		20	20	-	-
○ 3차 이상 위반		30	30	-	-
4)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 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		360	180	-	-

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5)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	-
6)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10	-	-
7)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60	-	-	-
8)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	-	-
9)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500	250	-	-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10)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	250	-	-
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0	150	-	-
11)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300	150	-	-
12)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00	150	-	-

13)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60	-	-	-
14)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	-
15)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20	120	-	-
16)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	15	-	-
17)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100	50	-	-

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8)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이하	30 이하	-	-
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500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호	300	150	-	-
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500	250	-	-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2)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0	30	-	-
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300	150	-	-

아.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3	200	-	-	-
자.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60	-
차.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1)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60	-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360	-
3)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60	-
4)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	-	60	-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5)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30 이하	-
카.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20	-
2)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360	-
3)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10	-
4)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	-	20	-

가입한 경우					
5)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60	-
6)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60	-
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	-	120	-
파.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	-	300	-
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	-	-	60
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	-	-	6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	-	-	-	120

경우					
다.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 제32조제1항제9호					
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20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20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2차 위반	-	-	-		20
○ 3차 이상 위반	-	-	-		30
4)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360
5)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360
6)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	-	-	-		20

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7)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60
8)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60
9)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	120
10)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	-	-	-	30

사하게 한 경우					
11)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	-	100	
1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60 이하	
러.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	-	120
며.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호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	-	-	500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2)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	-	-	60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	-	-	300

비고

1. 위 표 다목16)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라목, 사목, 아목 및 파목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 미이행률

3.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 미이행률은 별표 1 비고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위 표 바목 및 머목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일련번호 : 18 - 9】

처 분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51, 4868, 4866,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 기준에 따라 처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8월 30일(2021년 7월 27일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실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감경(20%) 과태료 납부 시 처분 완료]
	의견청취 절 차	의견서 제출
비 고	2021.7.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변동사항 다수 발생)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삭제 <2019. 6. 25.>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라.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	50만원
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50만원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3	50만원
사.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	50만원
아.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법 제70조제2항제4호의2	50만원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자.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70조제2항제5호	
1)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차.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70조제2항제6호	
1)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카.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6호의2	300만원
타.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7호	300만원
파.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8호	100만원
하. 법 제18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9호	100만원
거. 법 제20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0호	300만원
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1호	50만원
더.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2호	100만원
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제12	100만원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호의2	
며.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3호	50만 원
버.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4호	300만 원
서.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5호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가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가산하여 1일당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5만원 15만원에 11일째부터 가산하여 1일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 보험회사등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6호	50만 원
저.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7호	50만 원
처.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	30만 원

커.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	300만원
터.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3	300만원
퍼.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 을 보조받거나 용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9호	200만원
허.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1호의2	50만원
고. 법 제51조의8(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호	100만원
노. 법 제51조의9(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3호	300만원
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2호	100만원
로. 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	50만원
모.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2	50만원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50만원
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4호	50만원
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5호	50만원
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6호	100만원
초.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7호	250만원

【일련번호 : 18 - 10】

처 분 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 처분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교통특별사법경찰팀 (☎ : 560-4963, FAX : 560-2754)	
처분기준	기 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별표 6]의 범칙금을 통고처분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정 2001년 1월 29일 (2021년 7월 2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수사 -> 통고처분(납부시 종결, 미납부시 사건 송치)
	의견청취 절 차	없음
비 고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 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일련번호 : 18 - 11】

처 분 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한 행정상 제재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560-4864, FAX 560-2734)	
처분기준	기 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기준에 따라 처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7년 8월 30일(2013년 5월 2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단속(적발) 또는 실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감경(20%) 과태료 납부 시 처분 완료]
	의견청취 절 차	의견서 제출
비고	- 2019.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2019.6.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관련)

1. 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

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6.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2.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3.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행위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6개월 정지(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2회 이상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1년 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이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하고 3개월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주유업자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 전까지 의견진술 등을 통해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주유업자는 3개월 내에 자기 부담으로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호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 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연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유예를 취소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행정상 제재 조치에 따른 화물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 카드 거래정지 15일 전에 한도관리시스템에 해당 주유소를 공지하고 거래·체크카드 발급자 및 최근 3개월 내에 특별관리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업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거나 행정상 제재 조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해제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사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4. 책임의 승계

-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 차 관 리 과

【일련번호 : 19 - 1】

처 분 명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560-5940, FAX 560-2792)	
처분기준	기 준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였을 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처분내용> 1.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4만원(5만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5만원(6만원) 단, 소방시설 주변 적색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8만원(9만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9만원(1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12만원(13만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13만원(14만원)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감경 및 가산금>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 미납자에 대하여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감경 - 납부지연 시 최대 70%까지 가산금 부과 (최초 부과한 납기기한 경과 시 가산금3%, 체납된 과태료 미납부 시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 매월 1.2% 부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기간내에 자료제출 시 최고 50% 감경(체납이 없을시)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도로교통법 1962년 12월 31일 제정(2019년 12월 24일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07년 12월 21일 제정(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진술 → 처분 ※ 의견진술결과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 경찰서에 통보
처분절차	의견청취 절 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비 고	

【일련번호 : 19 - 2】

처 분 명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29조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 560-3220, FAX : 560-2791)	
처 분 기 준	기 준	○ 「주차장법」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처분내용> 1.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참 고 사 항	
	설 정 연월일	1983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16년 2월 12일 최종변경)
처 분 절 차	처 리 절 차	○ 적발 → 원상복구 명령 → 사전통지 → 처분(고발)
	의 견 청 취 절 차	○사전통지 → 의견청취
비 고		

【일련번호 : 19 - 3】

처 분 명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9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 560-3220, FAX : 560-2791)	
처 분 기 준	기 준	○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처분내용> 1.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에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참 고 사 항	
	설 정 연월일	○ 1979년 7월 13일 법률제정(2025년 1월 31일 일부개정)
처 분 절 차	처 리 절 차	○ 적발 → 안전검사 이행명령 → 사전통지 → 처분(과태료 부과)
	의 견 청 취 절 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비 고		

차 량 민 원 과

【일련번호 : 20 - 1】

처 분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 560-4872, FAX : 560-2794)	
처분기준	기 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의 행정처분(사업등의 정지 및 등록등의 취소)을 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95년 12월 29일 (2021년 10월 1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실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행정처분 : 청문실시
비 고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1. 10. 14.>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대행자 또는 사업자	기술종사원
1. 등 록 번 호 판 발급 대 행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사.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아.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차.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9호 법 제21조제1항제10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2. 대체부품인증기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다.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2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3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5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6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3. 자동차 검사대행 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1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해임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사.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45조의3 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

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5호		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아.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카.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의2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 차 : 직 무 정 지 60일 2 차 : 직 무 정 지 90일 3차: 해임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3호	지정취소	
너.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더.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9호		직 무 정 지 10일
러.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5호	지정취소	
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버.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서.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 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8호	지정취소	
4. 택시미 터 전문 검 정기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5조제2 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 한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 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 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검정 을 한 경우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 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 법 제72조제2항에 따 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	법 제47조제5 항제1호 법 제47조제5 항제2호 법 제47조제5 항제3호 법 제47조제5 항제4호 법 제47조제5 항제5호 법 제47조제5 항제6호 법 제47조제5 항제7호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 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5 항제8호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5. 자동차 관리사업 자 가. 공통 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 한 경우 3) 법 제53조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 고 변경한 경우 4) 법 제53조제3항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 나 같은 조 제4항에 따 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5) 법 제55조제1항을 위 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 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 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의 명의로 사업을 하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법 제66조제1 항제2호 법 제66조제1 항제3호 법 제66조제1 항제4호 법 제66조제1 항제5호 법 제66조제1 항제6호 법 제66조제1 항제7호 및 법	등록취소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게 하는 행위	제57조제1항제1호	3차: 등록취소
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	① 사업장의 전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5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8)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사업정지 30일
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0)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	법 제66조제1항제11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법 제66조제1항제16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자동차 매매업자	13)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법 제66조제1항제12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법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사) 법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법 제66조제1항제9호 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자동차 정비업자	14)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8. 6. 28.> 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 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 점검 및 정비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라)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바)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사)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아)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1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법 제5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① 자동차 폐차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경우 마)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② 자동차등록증 등 폐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6. 자동차 제작자등	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7.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법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65조의2제5항을	법 제66조제4항제1호 법 제66조제4항제2호 법 제66조제4항제3호 법 제66조제4항제4호 법 제66조제4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 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 인 자동차 매매정보제 공을 한 경우	항제5호	2차: 등록취소	

【일련번호 : 20 - 2】

처 분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 560-4870, FAX : 560-2794)	
처분기준	기 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 [별표 1의2] 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정 1995년 12월 29일 (2023년 6월 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징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9.>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8조의4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8조의4제4항제2호			
1) 제13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제13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등록번호 판발급대 행자	자동차검 사대행자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100 2차: 3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차: 150 2차: 300 3차 이상: 450	1차: 200 2차: 600	1차: 200 2차: 6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차: 100 2차: 300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50 2차: 150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1차: 150 2차: 450	1차: 300 2차: 900	1차: 150 2차: 450
5)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6)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차: 200 2차: 600	1차: 300 2차: 900	1차: 200 2차: 600
7)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30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8)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차: 100 2차: 300	1차: 200 2차: 600	1차: 100 2차: 300
9)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0)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차: 200 2차: 400	1차: 150 2차: 300	1차: 150 2차: 30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마목		1차: 200 2차: 400 3차 이상: 600	

12)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3)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4) 법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1차: 300 2차: 900
15)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차: 20 2차: 40 3차 이상: 60	1차: 30 2차: 60 3차 이상: 90	
16)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		
17)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1차: 30 2차: 90 3차 이상: 270	
18)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20)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바목			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0. 14.>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비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줄인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다.

- 1)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합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합조사 착수 이후 조사 완료 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100분의 25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세부 감정기준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산정비율	과징금 상한액
가.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제1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또는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를 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100억원
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50억원
3)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50억원
4)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50억원
5)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50억원
6)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 분의 2	50억원

7) 그 밖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에어백 경고문구 표기 기준 부적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	1억원 10억원
나.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제2호	해당 자동차 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10억원
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2항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없음
라. 법 제31조의4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법 제7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4조제3항제5호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100억원
마.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4항	해당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	10억원

【일련번호 : 20 - 3】

처 분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 560-4883~8, FAX : 560-2794)	
처분기준	기 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12월 29일 (2024년 1월 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 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보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호·제5호		50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	법 제84조제4항제2호		50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제1호	50	150	250
사. 법 제10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제2호	50	150	250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2호	2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법 제84조제5항제2호의 2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		

인 경우		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6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7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10		
타.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0호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3)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하.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처리 요청 기간 내에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4호	100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5만원	을 더한 금액
거.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5호	150	300	300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6호	50	150	250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7호	30 50	100 150	150 250
러.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2호	3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0		
머.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1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0 100		
버.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3호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100 30 5 3
서.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4호	100
어.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3	100
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4일 이내인 경	법 제84조제1항제2호	600 600만원에 6일째부터 계

우		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75일 이상인 경우		2,000
2)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3)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200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1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72일 이상인 경우		600
4)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
처.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	500
커.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	100
터.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	100
퍼.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1)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300

2)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24일 이내인 경우		3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3) 경과 기간이 25일 이상인 경우		500
허.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3호	50
고.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3호	1,000
노. 법 제34조의3(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4	100
도.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	10
로.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
모.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	500
보.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4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0
소.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6호	10
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7호	100 30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8호	50
초.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2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코.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2	30	50	70
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3	40	60	80
포.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4항제19호	20 3		
호.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0호	100		
구.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9호	30		
누.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1호	100 10		
두.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1호의2	30		

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2호	30		
무.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2	100		
부.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3	30		
수.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3호	70 35		
우.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4호	30		
주.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	500	750	1,000
추.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	500	750	1,000
쿠.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5호	500		
투. 법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6호	500		
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8호	20		

【일련번호 : 20 - 4】

처 분 명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정지,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44조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560-4884, FAX : 560-2794)	
처분기준	기 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8조 및 제44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별표 2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별표 3]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정지 (2)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4년 1월 1일 (2023년 4월 25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현장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및 정지 : 청문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20만원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다. 법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	법 제44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를 새기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2만원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을 가산한 다)	을 가산한 다)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파. 법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법 제44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2항제5호 의2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 항제5호의3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거.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너.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 항제1호의3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러.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 료일부터 30 일을 초과하 는 경우 3일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버.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의2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 료일부터 30 일을 초과하 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 제10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 료일부터 30 일을 초과하 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산한다)
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1 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 료일부터 30 일을 초과하 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 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 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 를 대여한 경우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40만원	50만원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처.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 항제1호의4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2)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시적 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 원을 가산한다)		
		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 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 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 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2호나목2),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자목·타목,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머목

2), 같은 호 서목2), 같은 호 어목2) 및 같은 호 처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및 같은 호 어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타목의 경우: 300만원

라. 제2호서목2)의 경우: 30만원

마. 제2호처목의 경우: 200만원

2.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의 경우: 50만원

나. 제2호타목의 경우: 300만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제7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 3)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 4)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

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1호	취소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28조제2호	취소
다.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3호	취소
라.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인명피해 ①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법 제28조제4호	취소

말한다)를 입힌 경우 ②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18. 6. 28.> ④ 삭제 <2018. 6. 28.> ⑤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1) 사망 1명마다 (2) 중상 1명마다 (3) 경상 1명마다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3)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취소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면허효력정지 180일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법 제28조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조치
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제6호	취소
사.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5)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법 제28조제7호	면허효력정지 60일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아.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취소
자.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9호	취소

처 분 명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 560-4877, FAX : 560-2793)	
처분기준	기 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행한다. (1)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2)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3)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 ※ 상기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상태, 발견된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방치 자동차로 결정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6년 12월 31일 전부개정(2019년 8월 27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1) 제반 증거 확보 - 인근주민,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 내용 접수 (방치기간, 방치장소, 차량번호, 차량 상태 등) - 사진촬영(등록번호판, 차량 외관 등) (2) 강제처리 예고 및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3) 강제이전(견인)조치 (4)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계획의 통지 및 공고 -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 발부 -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 통지 및 공고 (5)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등록
	의견청취 절 차	
비 고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4. 2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300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00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300
(2) (1)외의 점검·정비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 칙 금 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법 제81조제2호	10 10만원에 11일 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도 로 과

처 분 명	도로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2조	
담당부서	도로과 보도관리팀 (☎ : 560-3393, FAX : 560-2764)	
처분기준	기 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함) 제72조에 의거,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설 정 년 월 일	1994년 1월 1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변상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27,100	18,100	4,600

		이하			0	0	
		지름 20m 초과 3.0m			45,20	30,15	
		이하			0	0	7,750
		지름 3.0m 초과			63,25	42,25	10,85
3. 주유소·수 소자동차 충 전시설·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 제1항제2호 에 따른 건 축물로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1조제1 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간판(돌출간 판은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년	58,400	38,950	9,900

유사한 것			1제곱미터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간판 및 시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처 분 명	도로무단 점유 과태료 부과 등	
근거법령	「도로법」 제117조	
담당부서	도로과 건설행정팀 (☎ : 560-4487, FAX : 560-2764)	
처분기준	기 준	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함) 제1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법 제1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
	설 정 년 월 일	1961년 12월 27일 (2025년 2월 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현장확인)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중략)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제3호에 따른 금액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련번호 : 21 - 3】

처 분 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담당부서	도로과 건설행정팀(TEL: 560-4484, FAX: 560-2764)	
처분기준	기 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별 다음 처분을 부과한다. (1)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3) 법 제8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4) 법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설 정 년 월 일	1996년 12월 30일(2023년 5월 9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 청문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 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3개월		3개월	
7)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가목	1개월	4,000만원	1개월	4,000만원	1개월	4,000만원
8)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가)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1개월		1개월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		5개월		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3개월		3개월		3개월	
13)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수령·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위를 강요한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4)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5)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		2개월		2개월		2개월	

우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8개월	30	24	16	8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개월	16	12	8	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비고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법 제82조의2제1항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법 제83조제10호	1년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0호	3개월	6,000만원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시행일] 제2호가목·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인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

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	법 제82조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리거나 빌려 준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5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3)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수령·지급에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4)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5)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	4개월		4개월		4개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제2항제5호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2개월		2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8개월	30	24	16	8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개월	16	12	8	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별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0호	3개월	6,000만원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별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8. 3.>

[시행일]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인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	2 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 제14호		300만원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목인한	법 제98조의2제1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제 7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의2 제2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 1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처.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처 분 명	도로점용 허가취소	
근거법령	도로법 제63조, 제101조	
담당부서	도로과 보도관리팀 (☎ : 560-3393, FAX : 560-2764)	
처분기준	기 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함) 제6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4년 1월 1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청문
비 고		

처 분 명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	
담당부서	도로과 건설행정팀 (☎ : 560-4485, FAX : 560-2764)	
처분기준	기 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 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 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 한 경우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76년 12월 31일(2011년 3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 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또는 철회 : 청문
비 고		

건축과

처 분 명	건축허가 취소	
근거법령	「건축법」 제11조제7항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팀 (☎ : 560-4721~6, FAX : 560-2769)	
처분기준	기 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1년 5월 31일(2020년 6월 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청문)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 청문
비 고		

처 분 명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법령	「건축법」 제80조제1항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행정팀(☎ : 560-4711~8, FAX : 560-2769)	
처분기준	기 준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1년 5월 31일 (2019년 4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예고 → 의견청취(의견제출) → 부과
	의견청취 절 차	이행강제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2 - 3】

처 분 명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건축법」 제113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팀 (☎ : 560-4721~6, FAX : 560-2769)	
처분기준	기 준	①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함)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아니한 자 ②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함)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법 제77조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8.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1년 5월 31일(2019년 4월 2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2 - 4】

처 분 명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제54조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 : 560-3331~4, FAX : 560-2769)	
처분기준	기 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

		체계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20년 5월 1일(2022년 2월 3일 최종변경)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처분절차	의견청취 절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1호	50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1호	1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2호	100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3호	10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4호	100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2호	500	750	1,0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 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3호	500	750	1,000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 제1호	300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6호	100	150	200

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4호	500	750	1,000
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5호	500	750	1,000
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6호	500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7호	100		
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 제2호	300		
너. 법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7호	500		
더.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8호	1,000		
러.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9호	1,000		
머. 법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법 제54조제3항	500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호			
버.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10호	1,000		
서. 법 제31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호	2,000		
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 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2호	2,000		
저.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3호	2,000		
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4호	1,000	1,500	2,000
커.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11호	500	750	1,000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12호	500		
퍼.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제8호	100		
허.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 제4호	300		
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 제13호	500		

처 분 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 : 560-3331~5, FAX : 560-2769)	
처분기준	기 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1984년 4월 10일(2023년 9월 2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80		
나. 법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80		
다. 법 제24조제6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	법 제66조제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항제3호		20 40	
라.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15	30	50
마. 법 제26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의2	80	120	200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의3	80	120	200
사.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아. 법 제26조의2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200		
자. 법 제26조의2제6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200	300	500
차. 법 제26조의5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	50	100	200
카. 법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법 제66조제3항제5호	80	120	200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80	120	200
파.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80	120	200
하. 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1)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8호	20 40		
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50	100	200
너.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3호	50	100	200

주 택 관 리 과

처 분 명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 (☎ : 560-5971~5, FAX : 560-2736)	
처분기준	기 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4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23년 3월 2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처 분 명	임대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 (☎ : 560-5971~5, FAX : 560-2736)	
처분기준	기 준	(1)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2)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3)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4)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5)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6)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7)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8)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9) 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0)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1)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2)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3) 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4)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5) 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처분내용> 법 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 과태료 부과 기준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84년 12월 31일 법률제정(2022년 1월 13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처 분 명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주택민원팀 (☎ : 560-3121~6, FAX : 560-2736)	
처분기준	기 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행한다. 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행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임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1.19.> 21. 삭제 <2016.1.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르는 자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16년 8월 12일 법률제정(2021년 8월 1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주 택 과

처 분 명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주택법」 제106조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팀 (☎ : 560-4731~5 / 560-5011~4, FAX : 560-2770)	
처분기준	기 준	○ 「주택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과태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4.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6.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11.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참고사항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설 정 년 월 일	1987년 12월 4일 법률제정(2024년 3월 19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이의신청) → 처분
	의견청취 절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제106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 2) 법 제106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 3) 법 제106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삭제 <2020. 12. 22.>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

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1,000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1,000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1,000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1호	500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직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1,000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2호	200		
사.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2호의2	500		
아. 감리자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2호의3	400		
자.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3호	400		
차.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400		
카.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	400		

타.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1,000
파.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1호	2,000
하.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2	500
거.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3	500
너.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2호	2,000
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4	500
러.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5	500
머.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5호	500
버.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6호	500
서.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6호	1,000
어. 법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4항제1호	300
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4항제2호	300

처.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	1,000		
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4호	1,000	1,500	2,000
터.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7호	100	200	300

도 시 재 생 경 관 과

처 분 명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담당부서	도시재생경관과 개발행위허가팀(☎: 560-4771~3, FAX: 560-2479)	
처분기준	기 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3년1월1일(2013년7월1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 의견청취(청문)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 청 문
비 고		

처 분 명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취소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담당부서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 560-4181~6, FAX : 560-2749)	
처분기준	기 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2)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 또는 제한지역에 표시한 때 (4)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때 ※ 위 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시정명령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해당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해설
	설 정 년 월 일	1990년 8월 1일(2016년 1월 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허가취소)
	의견청취 절 차	허가취소 : 청문
비 고		

처 분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제20조	
담당부서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 560-4181~7, FAX : 560-2749)	
처분기준	기 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3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 정 년 월 일	1990년 8월 1일(2016년 1월 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발생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처 분 명	옥외광고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담당부서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560-4181~7, FAX: 560-2479)	
처분기준	기 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설 정 년 월 일	1990. 8. 1.(2016. 1. 6. 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위반사항발생 →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 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의견청취 절 차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청문
비 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51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호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 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 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2 호의2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 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 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 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토 지 정 보 과

【일련번호 : 26 - 1】

처 분 명	개발비용 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 : 560-4844, FAX : 560-2787)	
처분기준	기 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라 동법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참고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설 정 년 월 일	1989.12.30. (2020.02.1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개발사업 허가(660㎡이상) → 대상사업 통지 →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미제출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6 - 2】

처 분 명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2, FAX 032-560-2786)	
처분기준	기 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제39조 및 제51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별첨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첨 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38조에 의한 등록취소 (2) 법 제39조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 (3) 법 제5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설 정 년 월 일	1989년 12월 30일(2023년 10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등록취소 : 청문 -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2	5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3	500만원
라.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4	500만원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5	400만원
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6	250만원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5호의2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원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원
4)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원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6호	200만원
자.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7호	300만원
차.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8호	400만원
카.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8호의2	400만원
타.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9호	200만원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1호	30만원
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2호	50만원
거.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2호의2	50만원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4호	20만원
러.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5호	30만원
며.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6호	30만원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7호	50만원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법 제39조 제1항제12	업무정지 6개월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호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	업무정지 3개월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4호	업무정지 1개월

처 분 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근거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 560-4816, FAX : 560-2786)	
처분기준	기 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부동산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의 과징금을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부과(명의신탁) (2) 법 제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부과 【장기미등기(3년)】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5년 3월 30일(2016년 1월 6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징금·이행강제금 :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6 - 4】

처 분 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적팀 (☎ : 560-4825, FAX : 560-2787)	
처분기준	기 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행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부과기준
	참고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설 정 년 월 일	2016.12.3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곽에 어긋나는 측량성곽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5호	25	50	100
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2호	7	15	3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처 분 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 560-4817, FAX : 560-2786)	
처분기준	기 준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0년 8월 1일(2021년 12월 2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조사확인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별표] <개정 2010.12.23>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일련번호 : 26 - 6】

처 분 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6, FAX 032-560-2786)	
처분기준	기 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20년 8월 18일 (※2021.6.1.~2025.5.31. 과태료 부과 유예)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6 - 7】

처 분 명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허위신고)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2,3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6, FAX 032-560-2786)	
처분기준	기 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16년 1월 19일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일련번호 : 26 - 8】

처 분 명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신고)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4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7, FAX 032-560-2786)	
처분기준	기 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2016년 1월 19일(2023.10.4.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10만원 25만원 5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4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500만원

비고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보 건 소

처 분 명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신고)취소,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	
근거법령	「의료법」 제6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1~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의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4년 9월 12일 (2019년 8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개설허가(신고) 취소, 의료기관폐쇄, 면허취소 등 : 청문 -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1)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8)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4)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나)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차위반: 면제 2차위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		

익등을 받은 경우 5) 의료인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3), 19), 20), 31), 32), 34), 35), 36), 38),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2), 4), 10), 14) 및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감경		

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사.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

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의4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7)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1개월
8)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경고
1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니한 경우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6)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1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사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9호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조제4항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 고 자격정지 1개월 부표 2와 같음 자격정지 6개월 면허정지 (신고할 때까지) 경 고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3개월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23)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24) 삭제 <2012.8.7> 25) 삭제 <2012.8.7> 26) 삭제 <2012.8.7> 27) 삭제 <2012.8.7> 28)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9)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30) 삭제 <2018. 8. 17.> 3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경 고 면허취소 경고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공한 경우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 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 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 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 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 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 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 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33)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경 고
34)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 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5)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37)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 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6호	자격정지 15일
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 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7호	부표와 같음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	법 제63조	시정명령

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7)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9)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13)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5)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법 제63조	시정명령

경우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아니하는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8)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9)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	법 제64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우 26)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가) 법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나) 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28)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7호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취소 또는 폐쇄
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8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이 표에서 "의료기사등"이라 한다)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법 제22조제1	자격정지 1개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	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호	
3)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4호	자격정지 2개월
4)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2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7)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2개월
8)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 고
9)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 자격정지 7일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1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15) 치과기공사가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자격정지 3개월
16)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	면허취소
17)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	자격정지 1개월
18) 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5	자격정지 15일

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	법 제23조	시정명령

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 자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23조	시정명령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기 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 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6호	등록취소
5)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2호	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과대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 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8)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면 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 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 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3호 및 제5 호	영업정지 3개월
9)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 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 속한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4호	등록취소

[부표 1]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 : 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 건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4만원 이상	-	1	2	3	4	5

20만원 미만	7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7만원 이상	1	2	3	4	5	6
4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	3	4	5	6	7
16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	4	5	6	7	8
700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35만원 이상	4	5	6	7	8	9
2,5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 고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표 2] <신설 2013.3.29.>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일련번호 : 27 - 2】

처 분 명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의료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1~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2009년 5월 1일 (2022년 8월 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6호	30	45	70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	100	150	300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1호	15	30	60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2			

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50	75	100	
마.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1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바.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	100	150	300
사.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 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300	300	300
아.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 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 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4	300	300	300
자.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	50	75	100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 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2호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 게 설치·운영한 경우	300	300	300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	50	75	100	

치·운영한 경우				
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3호			
		50	75	100
		100	150	200
		100	150	200
		100	150	200
		100	150	200
		50	75	100
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파.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 법 제92조제3항제3호	50	75	100
		50	75	10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0	90	100
3) 삭제 <2023. 2. 28.>				
하.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2			
1)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80	90	100
2)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100	100
거.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3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100	100
너.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4			
1)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80	90	100
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5	80	90	100
러.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4호	80	90	100
머.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	법 제92조제3항제5호	80	90	100

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버.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2호	100 200	150 200	200 200
서.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3호	100 200	150 200	200 200
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5호	100	150	300
저.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7호	80	90	100
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4호	100 200	150 200	200 200
커.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8호	30	45	70

처 분 명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0년 7월 1일(2022년 1월 1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지정)취소 : 청문 - 업무정지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이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다)한다.
5.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 제39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 마.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II. 개별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지정·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10.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법」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아목	승인취소			
1의2.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2호다목 법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개월	허가·지정 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2의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법 제44조제1항제2호바목	허가·지정 취소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자목	허가취소			
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가목	허가취소			
4.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 취소		
6.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삭제 <2018. 2. 9.>					
8. 삭제 <2018. 2. 9.>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및 같은 항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2호라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허가·지정·승인 취소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동물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허가·지정·승인 취소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허가·지정·승인 취소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마. 제21조제7항에 따라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바. 제21조제7항에 따라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					

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1)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 2)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이상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 · 지정 · 승인 취소	허가 · 지정 · 승인 취소
10.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 지정 · 승인 취소	허가 · 지정 · 승인 취소
1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4조 및 이 규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카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1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마약을 저장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	법 제44조제1항제1호타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시마약류 2)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2 군 임시마약류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1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를 봉합하지 않거나, 마약류취급자가 봉합하지 않은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14의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15.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허가취소			
15의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 제2항제1호, 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차목	허가취소			
17.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도매업자가 법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너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18.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처방전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더목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19.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20.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서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1호를 위반하여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조소 안에 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4호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라.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마약 외의 유효성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분의 함량이 기준치 보다 10% 이상 2 0% 미만 과부족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2) 마약 외의 유효성 분의 함량이 기준치 보다 10% 미만 과 부족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 칙 제40조제6호를 위반 하여 일반의약품과 별도 로 분리하여 저장·관리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바. 삭제 <2018. 2. 9.>				
사.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 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 용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 38조제3항 및 영 제12 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 시설을 주 1회 이상 점 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 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 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 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2.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어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업무정지 3개월	허가·지정 취소		
23.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24.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처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5.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커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일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6.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터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7.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퍼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7의2.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사목	허가취소			
28. 그 밖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처 분 명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8년 9월 29일 (2025년 2월 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법 제5조의 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0호	300만원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300만원		
다.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	법 제69조제1항제3호	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라.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500만원		
마.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300만원		
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300만원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의2	경고	30만원	100만원
아.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500만원		
자.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300만원		
차.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500만원		
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타. 대마에 대해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파.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300만원		

【일련번호 : 27 - 5】

처 분 명	의약품판매업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4, FAX : 718-0790)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2년 7월 1일 (2024년 10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허가(등록)취소, 면허취소 : 청문 -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합산·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인과관계에 있어 같은 사안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개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않는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연수교육은 2년, 법 제47조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시 II.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5.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로서 제2호의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한다.
7.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한다.
8.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의약품등의 시험 결과 성질·상태, 내용량 및 실용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부적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유효성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다.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되, Ⅱ. 개별기준 제20호차목 및 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마. 허가(등록·면허)취소처분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어 업무(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업무(자격)정지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바.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보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한다.

사. 법 제47조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한다.

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장 또는 포장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한다.

10.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같은 장소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개설등록신청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 및 제79조제1항	면허취소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5조 및 제79조제1항	면허취소			

3.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6조제3항	자격정지 9개월	면허취소		
4. 약국개설자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6조	등록취소			
5.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이 규칙 제7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면허취소		
6.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이 규칙 제8조제1항)				
가. 약국 소재지의 이전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약국의 명칭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7.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판명된 경우	법 제20조제5항	등록취소			
8. 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 규칙 제10조)				
가. 1명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면허취소			
나.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9.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6항(이 규칙 제13조)	업무정지 15일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13.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 및 제79조				
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 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7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라. 약국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 다)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와 담합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사.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아.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자.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	(법 제27조제3항)	자격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향)	15일	1개월		
차.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않은 경우(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4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면허취소
카.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이름 등을 적지 않거나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다.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파.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하. 약사가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거. 약사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4.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허가 없이 반입한 가공품을 제조·사용 또는 판매	법 제43조				

한 경우						
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한약업사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허가 취소	
다.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허가 취소	
라. 한약 도매상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허가 취소	
16.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제1 항(이 규칙 제 3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가. 영업소 또는 창고의 소재지 이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도매상의 종류 변경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영업소의 명칭, 도매업자(대표 자) 및 관리자 변경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7. 의약품 도매상이 제36조제3항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 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도매업 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 항 본문 및 제 8항 단서 (이 규칙 제42조제 5항)					
가.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나. 한약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다. 의약품의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19.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경우	법 제46조		업허가 취소			
19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거짓	법 제76조제1		신고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	항제5호의7	수리의 취소				
19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46 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 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1 항제5호의8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9의4.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46 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 에 미달한 경우	법 제76조제1 항제5호의9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19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46 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76조제1 항제5호의10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0.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가목 및 이 규칙 제 44조제1항(제6호다목은 제외하 다)·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 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62조제2호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1) 의약품 도매상 2) 약국등의 개설자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62조제2호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의약품 도매상 2) 약국등의 개설자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62조제3호를	법 제47조(이 규칙 제44조, 「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 62조 및 「생 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 칙」 제5조 및 제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위반한 경우				
1)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2) 저장·진열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4호 및 제5 호(저장·진열한 경우만 해 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규칙 제44조제1항제6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62조제7호 또 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 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 우				
1) 보관온도에 따라 구분이 필 요한 의약품을 냉장 또는 냉동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 거나, 운송 중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품질관리기록, 온도 기록, 검정 ·교정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 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생물학적 제제등 출고 시 운 송처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4)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을 부착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5)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약품의 잠금장치, 소화설비 및 냉동·냉장설비 (생물학적 제제등의 냉동·냉 장설비는 제외한다) 등을 갖 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6)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생물학적 제제 등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보관시설),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또는 차량(수송설비)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허가 취소
7)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송용기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대한 수송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허가 취소	
10) 그 밖에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사. 법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아. 제44조제3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자. 제44조제3항제3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차.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카.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타.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7조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	

항을 위반한 경우 파.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하.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 법 제79조제3항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부표 2와 같음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취소 영업소 폐쇄	
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2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1.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22. 약국개설자가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봉 판매한 경우	법 제76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23.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24. 매약상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9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25.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등록또는 허가취소		
26.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27.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저장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취소	
28. 의약품 도매상이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9.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약품	법 제61조				

도매상이 다음 각 목의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가. 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나. 위조 의약품,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다. 위조 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30.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31.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1조부터 법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명령·공표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 또는 관리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32. 약국시설이 영 제2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3.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 또는 창고가 없는 경우(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5조제2항(영 제31조의2,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	업허가 취소			
나. 창고에 제37조제1항 각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허가

호의 시설을 두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취소
다. 보유자산이 자산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허가 취소		
라. 창고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수탁자의 창고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허가 취소
마. 그 밖에 영 제31조의2 및 이 규칙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34. 약업사·한약업사 또는 매약상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1조의2 제1항·제4항, 이 규칙 제32조·제43조	허가취소			
가. 영업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나. 보관시설 등 영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35.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1 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36.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9조제2항 제1호	경고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37.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79조제2 항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8.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법 제79조제2 항제2호	부표 1과 같음			
38의2.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9조제2 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39.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	법 제79조제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3항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40.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경고	자격정지 3일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41.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1.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89조제3항 및 이 규칙 제59조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부표 1]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 월)

월 평 균 거짓 청구금액	거 짓 청 구 비 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 고

1. 월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약제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거짓 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약제급여비용 총액)×100’ 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짓 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약제급여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 짓 청 구 금 액	행 정 처 분 기 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약제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약제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표 2] <개정 2024. 7. 31.>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위반차수	가액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위반	2,0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위반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위반	-	자격정지 12개월

【일련번호 : 27 - 6】

처 분 명	의약품판매업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약사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4 FAX : 718-0790)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4년 7월 8일 (2024년 10월 1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자목 및 차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21. 4. 6.> 나. 삭제 <2021. 4. 6.>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50	75	100
라.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	30	45	70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	30	45	70
바. 법 제22조 또는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휴업·재개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50 30	75 45	100 70
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	30	45	70
아. 법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4	30	45	70
자. 법 제34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중 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5	100	100	100
차. 법 제37조의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50	75	100
카. 법 제37조의4(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3	50	75	100
타.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98조제1항제5호	100	100	100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파. 법 제40조제2항(법 제42 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5 호의2	50	75	100
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 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 호의2	50	75	100
거. 법 제44조의2제4항 본문 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법 제98조제1항제6 호의3			
1) 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45	70
너.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 호의4	50	75	100
더.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 호	30	45	70
러. 법 제47조의3제2항(법 제 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 호의2	100	100	100
머. 법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 호의3	100	100	100
버. 법 제56조제2항(법 제44 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6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	법 제98조제1항제7 호의4	50	75	100

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서. 법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5	50	75	100
어. 법 제6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	50	75	100
저. 법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7	50	75	100
처. 법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	50	75	100
커.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9호	30	45	70
터.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0호	30	45	70
퍼. 법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0호의2	30	45	70
허.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9	50	75	100
고.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0	50	75	100
노. 법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1	50	75	100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도. 법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1호	50	75	100

【일련번호 : 27 - 7】

처 분 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신고취소, 영업소폐쇄,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별표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7월 28일(2024년 01월 16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영업소폐쇄, 업무정지 등 : 청문
비 고		

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가.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이하 "품목"이라 한다)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기준의 각 업무정지기간별로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사안으로 2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시험기기 미비 및 시험 미 실시 등)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나. 위반사항이 2종 이상으로서 업무정지와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과 품목정지기간을 각각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품목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때에는 업무정지처분만을 행하고 업무정지기간이 품목정지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정지기간이 업무정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품목정지처분을 병과한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품질부적합은 2년, 법 제13조제3항(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시 II.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의 최대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수입업허가 또는 해당 품목의 허가·인증을 취소하거나 수리업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한다.

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3. 동일한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5차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4차 위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4. 행정처분의 기준 중 그 위반사항이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개별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전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허가·인증·신고 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5.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이 개별 제조소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6.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품목이 다르거나 Ⅱ. 개별기준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을 2분의 1 (바목의 경우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행정처분 기준이 제조·수입업 허가 및 해당 품목의 허가·인증의 취소,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의 금지 또는 수리업소·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로 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및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성능·안전성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의 정도 등이 경미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수리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기를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마.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회수한 후 회수결과를 알린 때

바. 법 제13조제3항(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회수한 결과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4차 이상 위반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 조 업 · 수 입 업 허가 취소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전 제 조 · 수 입 업 무정지 6 개월	제조업 · 수 입 업 허가취소		
3. 제조업자가 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5개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10개월	해당 품 목 제조 허가 · 인 증 취 소 또는 제 조금지	
가.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소가 없는 경우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허 가 · 인증취소 또 는 제조금지

다. 그 밖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라.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시험을 위탁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해당 품목 제조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지
마.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해당 품목 제조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지
3의2. 법 제6조제7항(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 36 조 제1항제3호의2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제조·수입허가취소
3의3. 법 제6조의2제4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 36 조 제1항제3호의3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5일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7조제1항(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 조 제1 항 제4호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취소 해당 품			
가. 조건부 제조업·수입업 허가					
나. 조건부 제조허가·수입 허가					
다. 조건부 제조인증·수입		해당 품			

인증		목	제조				
라. 조건부 제조신고·수입 신고		· 수입인 증취소 해당 품 목	제조 · 수입금 지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5호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9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제조·수입허가취 소	품목
5의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가 법 제8조제3항을 위 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지 않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조사 계획 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5호의2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제조·수입허가취 소	품목
5의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가 법 제8조제4항을 위 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 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5호의3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제조·수입허가취 소	품목
가. 기한 내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정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제조·수입허가취 소	품목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해 당 품 목 제조·수 입허가취 소					
5의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법 제36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품목

자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 제 1 항 제5호의4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5개월	제조·수입허가취소
5의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5호의5	해 당 품 목 제조·수입허가취소			
5의6.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기한 내 시판 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5호의6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 당 품 목 제조·수입허가취소	해 당 품 목 제조·수입허가취소		
5의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5호의7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2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4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취소
5의8.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5호의8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해 당 품 목 판매업무 정 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취소
6.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 제36				

가 법 제9조(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않거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 제 1 항 제6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가. 재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다. 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7.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7호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취소		
8.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 제36				

가.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 제 1 항 제8호				
가. 제조업소·수입업소의 소재지 변경(제조소 추가를 포함)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나. 제조업소·수입업소의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경고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다. 의료기기의 구성 부분품 중 일부의 형태, 규격 또는 재질 등의 변경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라. 품질책임자 변경	경고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7일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마. 외관, 포장재료, 포장단위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바. 허가받은 제조업소 또는 수입업소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9. 제조업자가 법 제13조제1	법 제36				

항을 위반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조소의 시설의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오염 등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나.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거나 유해한 물질을 유출·방출시킨 경우 다.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른 품질매뉴얼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라.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자재·완제품의 입출고,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마.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3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조 제 1 항 제9호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2개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4개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제조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 지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제조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 지 제 조 업 허가취소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 월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제조 허가·인증 취소

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제조공정), 시험검사, 설계관리(유효성 확인을 포함한다) 및 시정·예방조치(고객 불만처리 기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라 구매관리, 부적합품관리, 측정장비관리, 문서·기록관리 및 내부품질감사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바.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조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제조단위별 기록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 월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제조허가·인증 취소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 일 경고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일 정지 15 일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 월

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조기록 또는 시험검사기록을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 삭제 <2022. 1. 21.>	6개월	증 취소		
아.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 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 제 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 정지 1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 정지 3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증 취소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 정지 6개 월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증 취소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제조허 가·인증 취소 또 는 제조 금지
자. 제27조제1항제10호 또 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 표 2 제2호에 적합함을 인정받지 않고 의료기기 를 판매한 경우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증 취소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금지	
차. 제27조제1항제10호 또 는 제11호를 위반하여 별 표 2 제2호에 따른 품질 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 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 목 제조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 목 제조 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금지	
카. 제27조제1항제12호를 위 반하여 최신의 기준규격 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 질관리체계 유지,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 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 일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 월	전 제조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전 제 조 업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 월
타. 제27조제1항제1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부				

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제27조제1항제15호가목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하지 않은 경우 2) 제27조제1항제15호나목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 제27조제1항제16호를 위반하여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제27조제1항제16호가목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행한 경우 2) 제27조제1항제16호나목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의2. 법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제27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금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나.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보고한 경우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7일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6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10.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3항(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0호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11. 수입업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전수입 업무 정지 6개월	수입 허가 취소		
가. 영업소 또는 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전수입 업무 정지 1개월	전수입 업무 정지 3개월	전수입 업무 정지 6개월	수입 허가 취소
나. 보관창고에 해당 의료기기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1년	전수입 업무 정지 3개월
다. 해당 품목에 관한 시설 중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라. 그 밖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수입업자가 법 제15조제	법 제36				

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수 입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조 제 1 항 제9호				
가.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하여 수입업소의 시설 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오염 등을 방지 하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 월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 월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 월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수입 허가 · 인 증 취소 또는 수입금 지	
나.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 반하여 수입의료기기 및 부속품의 보관, 입출고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를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 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 월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 월	수 입 업 허가취소 또는 수 입금지		
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 품질관리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2개 월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4개 월	전수입업 무 정 지 또는 해 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 월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수입 허가 · 인 증 취소 또는 수입금 지	
라.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 를 위반한 경우나 관련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 은 경우					
1)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전수입업	전수입업	전수입업	수입업 허가취소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항 제11호를 위반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고객불만처리 기록을 포함한다), 시험검사 및 외국제조원의 제조 및 품질관리상황 확인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또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2)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보관·출하, 제품보관시설, 시험시설관리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무 정지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5일	전수입업무 정지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수입업무 정지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3) 제33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전수입업무 정지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7일	전수입업무 정지 무 정 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5일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마.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입 및 품질검사에 관한 수입단위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나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시험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바. 삭제 <2022. 1. 21.>				
사. 제33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수입허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 금지
아. 제33조제1항제15호를 위반하여 별표 4 제3호에 따른 적합함을 인정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자. 제33조제1항제15호를 위반하여 별표 4 제3호에 따른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차. 제33조제1항제16호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카. 제33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하여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제33조제1항제19호가목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2) 제33조제1항제19호나목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	해당 품목 판매	해당 품목 판매	해당 품목 판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비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다. 제33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 제33조제1항제20호가목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2) 제33조제1항제20호나목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파. 제33조제1항제17호를 위반하여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수입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13. 수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수리업소 폐쇄			
14. 수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갖추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전수리업무정지 2개월	전수리업무정지 5개월	전수리업무정지 8개월	수리업소 폐쇄
15. 수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6조 제1항 제8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경고	전수리업 무정지 7 일	전수리업 무 정 지 15일	전수리업무정지 1 개월
나. 소재지 등 그 밖의 신고 사항 변경	전수리업 무정지 1 개월	전수리업 무정지 3 개월	전수리업 무정지 6 개월	수리업소 폐쇄
16. 수리업자가 법 제16조제 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에 따른 수리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은 경우 가.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 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 한 경우 나. 제36조제2호를 위반하 여 상호 및 주소를 의료 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지 않은 경우 다. 제36조제3호를 위반하 여 수리를 의뢰한 자에게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9호	전수리업 무정지 3 월	전수리업 무정지 6 월	수리업소 폐쇄
17.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 용되는 법 제6조제1항제2 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1호	영 업 소 폐쇄		
18.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 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 조제1항8 호			

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나. 영업소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경고	판매·임대업무정지 3일	판매·임대업무정지 7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19.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1호				
가. 제39조 및 제40조(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가목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6개월
나. 제39조제4호를 위반하여 별표 6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2) 보관온도가 설정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별표 6 제2호에 따른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6개월
3) 문서기록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임대업무정지 7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4) 그 밖에 의료기기 유통		경고	판매·임대업무정지 3일	판매·임대업무정지 7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5일

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제40조제3호가목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대업무 정지 3일	대업무 정지 7일	지 15일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20.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0호	판매·임대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20의2.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봉합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1호의2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2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가. 기재사항의 전부를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기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가. 기재사항의 전부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가. 기재사항의 전부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4. 제조·수입업자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기재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나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3호				
가. 제4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나. 법 제2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나 제4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다. 제43조제1항제8호의 사항을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라.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마. 그 밖에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또는 제4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 1 항 제14호				
가. 별표 7 제1호, 제2호, 제5호, 제12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판매·임	판매·임	판매·임	판매·임대업무정

		대업무정 지 15일	대업무정 지 1개월	대업무정 지 3개월	지 6개월
나. 별표 7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 무정지 6개월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판매·임 대업무정 지 7일	판매·임 대업무정 지 15일	판매·임 대업무정 지 1개월	판매·임대업무정 지 3개월
26의2.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법 제25조의5를 위 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합하지 않고 판매 한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14호의 2	해당품목 제조·수 입업무정 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수 입업무정 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수 입업무정 지 6개월	해당 품 목 제조·수입업무정 지 9개월
27.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 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14호의 4 및 제 15호				
가.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에 대한 기록을 작 성·보존·제출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작성·보 존·제출한 경우	법 제36 조 제 1 항 제14호의 4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 증 취소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3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6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년
나.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5호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 무정지 3개월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5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2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3개월
28. 의료기기취급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6호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전제조 · 수입 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 정지 1개월	전제조 · 수입 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 정지 3개월	전제조 · 수입 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 · 인증 취소 또는 제조 · 수입 금지
나.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5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3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6개월
29.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	법 제36				

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조 제 1 항 제17호				
가.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수리, 판매 또는 임대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5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3개월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6개월	
나.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3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7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5일	수리 · 판매 · 임대 업무정지 1개월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 · 인증 취소 또는 제조 · 수입 금지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전제조 · 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 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 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 · 인증 취소 또는 제조 · 수입 금지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제조	

가 제52조제6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에게 회수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아.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3조제4항에 따라 반품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수리·판매·임대 업무정지 3일	수리·판매·임대 업무정지 7일	수리·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수리·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또는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회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회수종료보고서를 제	전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전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전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출한 경우		제조·수입 업무 정지 1개월	제조·수입 업무 정지 3개월	제조·수입 업무 정지 6개월	
29의2.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17호의2	경고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경고	판매·임대 업무 정지 7일	판매·임대 업무 정지 15일	판매·임대 업무 정지 1개월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나.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임대 업무 정지 15일	판매·임대 업무 정지 1개월	판매·임대 업무 정지 3개월	판매·임대 업무 정지 6개월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29의3.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	법 제36조 제1항 제17호의3	해당 품	해당 품	해당 품	해당 품목 제조 및

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 수입 금지 해당 품목 판매업 무 정지 6개월
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9의4. 의료기기취급자가 법 제31조의5제1항을 위반 하여 이물 발견 사실을 보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	법 제36 조 제1항제 18호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 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 무정지 6개월
나.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 는 임대업자		수리·판매 · 임대 업무 정지 7일	수리·판매 · 임대 업무 정지 15일	수리·판매 · 임대 업무 정지 1개월	수리·판매·임대 업 무정지 3개월
3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 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 제36 조 제1항 제19호	전 제조· 수입업무 정지 1개 월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2 개월	전 제조· 수입업무 정지 3개 월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5 개월	전 제조· 수입업무 정지 6개 월 또는 해당 품 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8 개월	제조·수입업 허 가취소
나.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 는 임대업자		수리·판 매·임대	수리·판 매·임대	수리·판 매·임대	수리업소 또는 영 업소 폐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0호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나.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전원입력, 전압 및/또는 에너지 제한, 연속누설전류 및 환자측정전류, 내전압, 기계적강도, X선, 과온도, 넘침·유출·누설·습기·액체의 침입, 청소·소독 및 멸균, 위험한 출력에 대한 안전, 이상동작 및 고장상태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 외장 및 보호커버, 보호접지·기능접지 및 등전위화(전위를 같게 만드는 일), 정상적인 사용 시의 안정성, 비산물(흩날리는 물질), 압력용기 및 압력을 받는 부분, 부품 및 조립 일반, 전원부(부품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및 배치), 구조 및 배치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의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라.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누설X선 제한, 여과, 촬영용 X선장치의 X선속의 제한, 1차선방어벽의 이용선 제한, 투시촬영장치의 X선속 제한, 투시촬영장치의 주변으로부터의 산란성방어, 입사조사선량율의 제한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초점(수상면간 거리, 피부간 거리) 측정, 주요 부품의 안전을 위한 구조(X선 제어장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장치, X선 조사야제한기구, X선 기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계장치, XTV모니터,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의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바. 성능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 무균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아. EO가스잔류량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 그 밖의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1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3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6 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2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4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6 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 정 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1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3 개월	해당 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6개 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3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6 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수입 금지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1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3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6 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 증 취소 또는 제 조·수입금지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 정 지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1 개월	해당 품목 제조 · 수입업 무정지 3 개월	해당 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6개 월

3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1호	15일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제조·수입업 허가 취소
33. 법 제34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회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 제36조 제1항 제21호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제조·수입업 허가 취소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1개월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3개월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6개월	수리업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그 밖의 처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15일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1개월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3개월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6개월

33의2. 법 제43조의6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1호의2				
가. 영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나. 영 제12조의6제2항에 따른 가입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다. 영 제12조의6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 및 가입시기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금지	
3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2호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7일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15일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1개월	수리·판매·임대업무 정지 3개월	

35.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3호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수리업소·영업소 폐쇄				
36.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4호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업·수입업 허가 취소 또는 수리업소·영업소 폐쇄				
3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않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5호	전 제조·수입업 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38.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갱신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5호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신고 수리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처 분 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기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11년 10월 7일(2025년 02월 07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의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의2제2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80	100
나. 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2	50	80	100
다. 법 제14조(법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등을	법 제56조제1항제2호	30	50	80

신고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 1항제2호의2	50	75	100
마.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 1항제2호의3	50	80	100
바.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 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 1항제2호의4	50	80	100
사.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 1항제2호의4	50	80	100
아. 법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이물 발 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 1항제3호	50	80	100

처 분 명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등)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취소 등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1~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의 [별표]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94년 9월 12일 (2019년 8월 30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면허취소, 등록취소 : 청문 -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1)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8)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4)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나)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차위반: 면제 2차위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		

익등을 받은 경우 5) 의료인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3), 19), 20), 31), 32), 34), 35), 36), 38),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2), 4), 10), 14) 및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감경		

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사.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 [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의4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7)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경우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1개월
8)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1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 고

한 경우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 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 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16)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부표 2와 같음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1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4항	면허정지 (신고할 때까지)
1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사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 고
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2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23)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경 고
24) 삭제 <2012.8.7>		
25) 삭제 <2012.8.7>		
26) 삭제 <2012.8.7>		
27) 삭제 <2012.8.7>		
28)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 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	법 제65조제1 항제2호	면허취소
29)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 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0호	경고
30) 삭제 <2018. 8. 17.>		
3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 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1호	자격정지 1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 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 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을 위반 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 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 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 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 품을 사용하거나, 변질· 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 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		자격정지 3개월

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라) 형법 「제270조」를 위 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 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33)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경 고
34)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 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5)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37)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 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6호	자격정지 15일
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 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 우	법 제66조제1 항제7호	부표와 같음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 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 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	법 제63조	시정명령

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7)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9)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	법 제63조	시정명령

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 고
13)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5)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8)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 19)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법 제63조

시정명령

법 제63조

시정명령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26)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가) 법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나) 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28)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7호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8호	한다) : 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이 표에서 "의료기사등"이라 한다)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호	자격정지 1개월
3)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4호	자격정지 2개월
4)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2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7)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	법 제22조제1	자격정지 2개월

사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항제3호	
8)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 고
9)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1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15) 치과기공사가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법 제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자격정지 3개월

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16)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	면허취소
17)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	자격정지 1개월
18) 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5	자격정지 15일

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시정명령
3)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시정명령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5)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과대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8)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영업정지 3개월
9)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부표 1]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 : 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 고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일련번호 : 27 - 10】

처 분 명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 718-0421~0424,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년 월 일	정 일 2011년 11월 16일 (2018년 12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80	90	100
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2호	20	30	4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3호	80	90	1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	500	500

【일련번호 : 27 - 11】

처 분 명	소독업의 업무정지 명령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영업정지 등)	
담당부서	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718-0461, FAX : 718-0791)	
처분기준	기 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영업정지 등)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1954년 2월 2일(2010년 1월 1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 영업소 폐쇄 : 청문 - 영업정지 : 의견제출
비 고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II.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 차	2 차	3 차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1항	영업정지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3개월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개월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처 분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원팀 (☎ : 718-0522, FAX : 718-0792)	
처분기준	기 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기준 등)제1항[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설 정 년 월 일	1995년 1월 5일(2020년 12월 29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170	33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 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 2 항 제3호	75	150	300

처 분 명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	
담당부서	법 제23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 718-0603, FAX : 718-0790) 법 제29조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제3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설 년 월 일	2006.05.12.(2016년 03월 1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 고		

【 별 표 】

■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23조 및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9조 및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일련번호 : 27 - 14】

처 분 명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2,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8년 6월 11일(2022년 12월 22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2	50	75	100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3	50	75	100	
사.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4	50	100	150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	20	40	60	
차.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3	50	100	150	
카.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50	75	100	

타.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50	75	100
파.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100	150
하.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50	200	300

【일련번호 : 27 - 15】

처 분 명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2,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별표1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행정처분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4년 7월 28일(2023년 02월 24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영업소 폐쇄 등 : 청문
비 고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 마.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2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 제 1 항 제 2 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 제 3 항 제 3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법 제55조 제 1 항 제 3 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4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55조 제 1 항 제 3 호의2	자격취소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법 제55조 제 1 항 제 4	자격취소			

우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 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 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 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호 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 치를 행한 경우	법 제55조 제 1 항 제 5 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 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 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1 항 제 6 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 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 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의 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호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 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 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 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 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터.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 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 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법 제55조 제 1 항 제 1 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 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 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5 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소.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오.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칭을 사용한 경우				
코.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55조 제 3 항 제 1 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처 분 명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 : 718-0603, FAX : 718-0790)	
처분기준	기 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별첨]
	참고사항	
	설 정 년 월 일	2009년 3월 22일(2020년 09월 0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검진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 청문
비 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 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1)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발전을 등에 기여한 경우

2. 개별 기준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여 검진을 한 경우	호			
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연평균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아 동 행 복 과

【일련번호 : 28 - 1】

처 분 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담당부서	아동행복과 아동보호팀(☎ : 560-6831)	
처분기준	기 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과태료의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붙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첨1]
	참고사항	
	설 정 연 월 일	2014년 1월 28일 법률제정 (2024.12.20. 일부개정) 시행령 2021년 5월 18일 일부개정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진술 → 처분
	의견청취 절 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사의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300	5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300	500	1,0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300	500	1,0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2제1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 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 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의2	300	500	1,0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300	5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 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 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6호	300	500	1,000